

<p>제2023-78호 2023년 9월 11일(월)</p>	<p>시  보</p> <p>여수시</p>	<p>시 정 지 표</p> <p>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3-39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3-395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
○ 여수시 고시	제2023-398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5
○ 여수시 고시	제2023-39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7
○ 여수시 고시	제2023-40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8
○ 여수시 고시	제2023-40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소라면 사곡리 1341)	9
○ 여수시 고시	제2023-40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10
○ 여수시 고시	제2023-40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11
○ 여수시 고시	제2023-407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12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3-2476호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화양면 화양교 앞 도로확장)	14
○ 여수시 공고	제2023-2482호	202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19
○ 여수시 공고	제2023-2502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공고	22
○ 여수시 공고	제2023-2508호	2023년 결산기준(2022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	25
○ 여수시 공고	제2023-2521호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29
○ 여수시 공고	제2023-252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30
○ 여수시 공고	제2023-2536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둔전리 산106, 산106-1번지)	125
○ 여수시 공고	제2023-2539호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27
○ 여수시 공고	제2023-2542호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31
○ 여수시 공고	제2023-2543호	2023년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음향·영상장비 운용관리) 모집 재공고(2차)	133
○ 여수시 공고	제2023-2550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평사리 928-68, 913, 916번지)	148
○ 여수시 공고	제2023-2553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평사리 산318-112)	150
○ 여수시 공고	제2023-255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중흥동 1802번지 여수 환경에너지시설 건설공사)	152
○ 여수시 공고	제2023-256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62

○ 여수시 공고	제2023-2568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여수상공회의소)	182
○ 여수시 공고	제2023-2569호	도로 지정 (변경)공고	185
○ 여수시 공고	제2023-2577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187
○ 여수시 공고	제2023-2579호	여수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운영지침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89
○ 여수시 공고	제2023-2585호	하반기 농기DB구축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현지조사)	194
○ 여수시 공고	제2023-2588호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209
○ 여수시 공고	제2023-2590호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211
○ 여수시 공고	제2023-2591호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공고	213
○ 여수시 공고	제2023-2593호	전문건설업(신규) 등록 공고	215
○ 여수시 공고	제2023-2594호	「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6

회 관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3 - 39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정일	사업준공 예정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3-43	2023. 8. 31.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23. 8.	'25. 7.	화정면 여자리 456-11번지 일원	화정면 여자리 마파선착장 정비 및 파제제 설치공사

2023. 9. 1.

여 수 시 장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7.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 **기정** 여수시 미평동 182-2번지 일원 → 변경) 미평동 182-2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1502)사업
 - 나. 명 칭: 봉화산 산림욕장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기정** 1,485㎡ → 변경) 1,480㎡
 - 나. 규 모: L=130m, B=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23. 3.30.~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토지조서(변경)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 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여주시 미평동	98-1	수	5,682	472		여주시				기정
1	여주시 미평동	98-2	수	474	474		여주시				변경
2	여주시 미평동	181-2	답	658	186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1-25	이춘성				기정
2	여주시 미평동	181-6	답	186	186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1-25	이춘성				변경
3	여주시 미평동	182-2	답	1,646	605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5-24 1층	이난희				기정
						전라남도 여주시 미평동 230-1	이승만				
							여주시				
3	여주시 미평동	182-21	답	593	593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5-24 1층	이난희				변경
						전라남도 여주시 미평동 230-1	이승만				
							여주시				
4	여주시 미평동	182-3	전	479	2	전라남도 여주시 여서동 374-7	김미은				기정
						전라남도 여주시 미평동 699-3	김기호				
4	여주시 미평동	182-24	전	1	1	전라남도 여주시 여서동 374-7	김미은				변경
						전라남도 여주시 미평동 699-3	김기호				
4-1	여주시 미평동	182-25	전	1	1	전라남도 여주시 여서동 374-7	김미은				변경
						전라남도 여주시 미평동 699-3	김기호				
5	여주시 미평동	182-4	전	260	76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상관길 11	김기호				기정
						전라남도 여주시 신월로 655, 103동 1202호(국동, 서희스타힐스아파트)	김미은				
5	여주시 미평동	182-26	전	79	79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상관길 11	김기호				변경
						전라남도 여주시 신월로 655, 103동 1202호(국동, 서희스타힐스아파트)	김미은				
6	여주시 미평동	182-12	도	135	67		국 (국토교통부)				기정
6	여주시 미평동	182-27	도	68	68		국 (국토교통부)				변경
7	여주시 미평동	184-9	답	730	7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01, 113동 2305호(중흥에스-클래스)	정병문				기정
7	여주시 미평동	184-15	답	78	7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01, 113동 2305호(중흥에스-클래스)	정병문				변경
합계				9,590 1,480	1,485 1,480						

○ 지장물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격	단위	수량	포함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개인별 물건													
1	미평동	181-2	비닐 하우스	244㎡	개소	1.0	55.02㎡	이춘성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1-25				기정
1	미평동	181-6	비닐 하우스	244㎡	개소	1.0	55.02㎡	이춘성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1-25				변경
2-1	미평동	182-2	비닐 하우스	240㎡	개소	1.0	0.27㎡	이난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5-24, 1층				기정
								이승만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230-1				
2-1	미평동	182-21	비닐 하우스	240㎡	개소	1.0	0.27㎡	이난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5-24, 1층				변경
								이승만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230-1				
2-2	미평동	182-2	컨테이너		개소	1.0	9.31㎡	이난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5-24, 1층				기정
								이승만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230-1				
2-2	미평동	182-21	컨테이너		개소	1.0	9.31㎡	이난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5-24, 1층				변경
								이승만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230-1				
3	미평동	182-4	능형망		m	16.0		김미은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55, 103동 1202호 (국동, 서희스타힐스아파트)				기정
								김기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상관길 11				
3	미평동	182-26	능형망		m	16.0		김미은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55, 103동 1202호 (국동, 서희스타힐스아파트)				변경
								김기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상관길 11				
4-1	미평동	182-12	수목		주	7.0		김기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상관길 11				기정
4-1	미평동	182-27	수목		주	7.0		김기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상관길 11				변경
4-2	미평동	182-12	능형망		m	24.0		김기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상관길 11				기정
4-2	미평동	182-27	능형망		m	24.0		김기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상관길 11				변경
5	미평동	184-9	비닐 하우스	360㎡	개소	1.0	21.63㎡	정병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01, 113동 2305호(중흥에스-클래스)				기정
5	미평동	184-15	비닐 하우스	360㎡	개소	1.0	21.63㎡	정병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01, 113동 2305호(중흥에스-클래스)				변경
6	미평동	98-1	웬스		m	21.0		여수시					기정
6	미평동	98-2	웬스		m	21.0		여수시					변경
한전주													
1	미평동	182-2	한전주		주	1		한국전력공사					기정
1	미평동	182-21	한전주		주	1		한국전력공사					변경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4.

여 수 시 장 (인)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79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촌1길 17-4	20230904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촌1길 17-4		20230904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245-8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양지길 72-18	20230904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분할	전라남도 여수시 장군산1길 5-6 (오림동)	전라남도 여수시 장군산1길 5-6 (오림동)	20230904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분할	전라남도 여수시 장군산1길 5-6 (오림동)	전라남도 여수시 장군산1길 5-8 (오림동)	20230904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길 91-1	20230904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분할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6 (소호동)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4-1 (소호동)	20230904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74-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길 91	20230904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64-5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21-28	20230904	20111111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388-15, 1371-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곡해안길 28	20230904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575-23, 575-5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264	20230904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3-039 (2023. 8. 4.)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64,2층 (학동)	위본건설(주)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1023원 지선 공유수면	881㎡	2023. 9. 4.	임시야적 시 주변 해안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2023. 9. 5.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3 - 40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 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2-35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74-8번지 일원	1,253	2023. 9. 6.	돌산읍 예교항 선착장 확장공사

2023. 9. 7.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7일

여 수 시 장

1. 허가번호: 제2023 - 26호
2. 허가일자: 2023년 9월 7일
3. 점용·사용의 장소: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341
4. 점용·사용의 면적: 8㎡
5. 점용·사용의 기간: 2023-09-07 ~ 2028-09-06
6. 점용·사용의 목적: 농지 진출입로(암거 설치)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박OO
 -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01, 112동 2603호
(신대중흥S클래스 1차아파트)

여수시 고시 제2023 - 40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 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3-36 (‘23. 6. 23.)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815-1번지 일원	449	2023. 9. 7.	율촌면 상봉2구 어장진입로 및 세척장 설치공사

2023. 9. 8.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3 - 40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 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3-24 (‘23. 5. 1.)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수지방해양 수산청 (항로표지과)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전면해상	22.06	2023. 9. 8.	죽도여등표 설치공사

2023. 9. 11.

여 수 시 장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8.

여 수 시 장 (인)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67-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9길 10	20230908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반월1길 76 (선원동)		20230908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711	전라남도 여수시 반월1길 76 (선원동)	20230908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1120, 1119, 1159-2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197 (소호동)	20230908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명 반영	
건물번호합병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4 (소호동)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4 (소호동)	20230908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합병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4-1 (소호동)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4 (소호동)	20230908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동 698-1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남3길 10-4 (공화동)	20230905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동 318-1	전라남도 여수시 내동길 52-1 (오림동)	20230905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2825-7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대동해안길 55	20230908	20080911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산167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송도길 415-2	20230908	20110209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촌1길 17-4		20230904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405-19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1길 86	20230908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화양면 화양고 앞 도로확장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일

여 수 시 장 (인)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화양면 화양고 앞 도로확장	전남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950-2번지 일원	○ 면적 및 규모 - 면적: 1,431㎡ - 규모: L=112.7m, B=10.5m	여수시장/ 여수시 시청로 1

2. 도로 구역을 결정·변경하려는 사유

- 본 사업은 화양면 화양고 앞 도로 확장을 통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 생활 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음.

3.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3-1.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열람

- 열람기간 : 2023. 9. 1. ~ 2023. 9. 15.(14일간)
- 열람장소 : 여수시 도로과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 1길23 1층(학동))
- 열람방법 : 여수시 도로과에 비치된 자료 열람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열람기간 종료일까지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 문 의 처 : 여수시 도로과(☎061-659-4078)

5.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

6. 출입 통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출입기간	출입할 토지	출입사유	비고
2023. 9. ~ 사업종료 시까지 (일출 후 ~ 일몰 전)	붙임 토지조서 참조	기본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1/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화양면 화동리	329-3	도	43	7	공	전라남도			
2	"	329-6	도	925	20	공	여주시			
3	"	329-4	도	122	11	공	여주시			
4	"	329-1	도	155	155	국	건설교통부			
5	"	329-2	전	1,242	133	김숙열	여주시 화양면 화동리 725	화양농업협동조합	여주시 화양면 나진리 476	근저당권설정
6	"	2080	도	4,840	316	국	국토교통부			
7	"	950-3	전	10	10	김맹순	여주시 고소동839			
8	"	949-2	전	1,544	36	이재섭	광주 북구 용봉동 1074-6 한신아파트 101-1604			
9	"	949-1	도	2	2	사정토지		이사원		
10	"	951-2	전	542	33	이후길	여주시 충무동 327 충무맨션 303호			
11	"	951-1	도	149	83	공	여주시			
12	"	951-3	도	130	45	공	여주시			
13	"	328-4	답	27	9	공	여주시			

○ 토지조서 (2/2)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매용
14	화양면 화동리	328-2	도	300	59	공	전라남도			
15	"	328-1	답	1,680	27	정관호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8-7(용천동)			
16	"	317-2	도	36	36	김성종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737			
17	"	317-1	답	1,220	66	정관호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8-7(용천동)			
18	"	950-2	도	344	344	김맹순	여수시 고소동839			
19	"	950-1	전	2,645	39	김맹순	여수시 고소동839			
소 계				15,956	1,431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 의 종류	규격	단위	수량	포함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매	
통신주													
1	화양면 화동리	951-3	통신주		개	1		KT					
한전주													
1	화양면 화동리	2080	한전주		주	1		한국 전력 공사					
2	“	950-2	한전주		주	1		한국 전력 공사					
3	“	329-4	한전주		주	1		한국 전력 공사					
표지판													
1	화양면 화동리	329-1	표지판		개	1		여수시					

여수시 화양면 화양고 앞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주민의견 제출서

사 업 명	화양면 화양고 앞 도로확장	
사업장 위치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950-2번지 일원	
의견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도로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202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 기 간 : 2023. 9. 4. ~ 9. 25.
- 장 소 :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열람대상 : 1,537필지
 - ❖ 2023. 1. 1. ~ 6. 30.까지 토지(임야)대장 상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 토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3. 9. 4. ~ 9. 25.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방법 :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1부.
2. 안내문 1부.

2023년 9월 4일

여 수 시 장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4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23. 1. 1.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조사·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 홈페이지와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 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 견 제 출 내 용	열람지가 원/m²	의견가격 원/m²
	의견제출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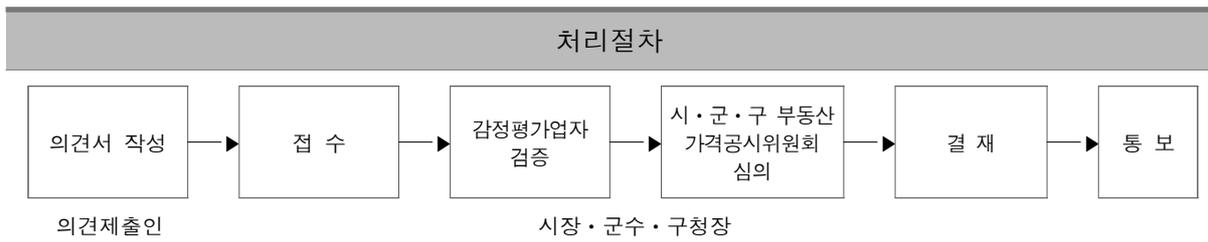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210-12번지 일원	화정면 사도 선착장 방파제 보강공사	416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3. 8. 31. ~ 2023. 9. 1.(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8. 31. ~ 2023. 9. 1.(15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chlsmile1004@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채린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여수시 재정공시(2022년 결산)

2023. 8.

여수시장 (인)

- ◆ 우리 여수시의 2022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조 3,206억 원으로, 전년대비 2,180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647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42만 원입니다.
 -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조 1,714억 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844억 원입니다.
- ◆ 2022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없습니다.
 - 공유재산은 '22년도에 토지 등 730건(2,629억 원)을 취득하고, 토지 등 944건(2,452억 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4조 146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시와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단위: 억원)



※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 II 유형[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 과천시, 원주시, 아산시, 구미시, 진주시, 양산시

- ◆ 우리 시의 2022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조 9,441억 원)보다 3,765억 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817억 원)보다 830억 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460억 원)보다 3,254억 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61억 원)이나, 우리 시 채무액은 없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조 2,475억 원)과 비교하여 2,329억 원이 적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국가산업단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 및 부동산과표 상승에 따라 자체수입이 전년대비 23% 증가하였고,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채무가 없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답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권은선(061-659-3419)

1 공통공시 총괄

- ☐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 원, %)

재정운영 결과		여 수 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 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 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23,206	21,026	2,181	19,442	19,243	198
	세출결산 (기금포함)	18,487	17,241	1,246	15,651	15,608	43
	기금운영현황	1,553	949	605	1,928	1,484	445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개	편	후	기	준	
	재정자주도	개	편	후	기	준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부채현황	1,017	1,057	△40	1,193	1,216	△23
	지방공기업부채현황	508	596	△88	907	622	285
	출자·출연기관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채무현황	0	0	0	262	265	△4
	지방채발행한도액 및 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부담현황	100	111	△11	101	90	1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현황	0	0	0	4	0	4
	채권현황	141	146	△5	80	84	△5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11	107	4	44	45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기준인비 집행현황		1,647	1,568	78	1,091	1,057	3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8	7	1	7	6	1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현황		14	13	1	8	8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맞춤형 경비현황		40	37	4	28	26	1
연말지출비율		340	393	△53	301	357	△56
금고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3,906	3,079	827	3,177	2,839	338
	지방세지출현황	282	254	28	408	385	22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28	194	34	420	404	16

재정운영 결과		여 수 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 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 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 회 복 지 비	4,886	4,509	377	4,548	4,476	72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156	965	191	921	899	22	
	지 방 보 조 사 업 운 용 평 가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최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 사 축 제 경 비	129	67	63	67	39	28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40,147	39,969	178	42,475	38,644	3,831	
	물 품 현 재 액	159	149	10	157	166	△9	
	출 자 · 출 연 금 집 행 현 황	14	10	5	148	195	△47	
	출자·출연기관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 과 보 고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무 제 표	자 산 총 계	73,246	71,074	2,172	59,684	58,169	1,515
		부 채 총 계	1,017	1,057	△40	1,193	1,216	△23
		수 익 총 계	16,458	13,821	2,637	13,044	12,596	448
		비 용 총 계	15,278	13,752	1,527	11,367	11,297	70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분 석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 행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결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 사 · 축 제 원 가 회 계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 사 신 추 원 가 회 계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 의 계 약 현 황	800	859	△59	662	814	△152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 수 · 처 리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 속 집 행 실 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 사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 간 투 자 사 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형 지방자치단체(시 II/20개) :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 과천시, 원주시, 아산시, 구미시, 진주시, 양산시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유형 지자체 평균액은 지자체 자료입력 완료 후 중앙에서 산출하여 e호조를 통해 제공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여천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7.

(인)

여 수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내용

가. 제한지역

구역별	위치	면적(m ²)	비고
여천역 주변지역	여천동 903-10번지 일원	363,688	

나. 제한사유

-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계획 중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은 물론 부동산 투기예방,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다. 제한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라. 제한제외대상

- 공공시설(목적)로서 개발행위제한 목적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
- 개발행위허가제한 최초 고시일 이전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토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심의·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

마. 제한기간(변경)

- 당초: 2020.10.15. ~ 2023.10.14.
- 변경: 2020.10.15. ~ 2025.10.14.(2년 연장)

2. 열람기간: 2023. 9. 7. ~ 9. 21.(14일간)

3. 열람장소: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4. 열람도면: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도시계획과 ☎061-659-4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에 따라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여 수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가. 용역명: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나. 위치: 여수시 웅천동 1865-1번지
-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용역내용 : 대상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타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금액 : 금859,000,000원(부가세 포함) (금회 1차분 : 177,000,000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라. 시행기관: 전라남도 여수시(체육지원과)
- 마. 입찰예정시기 : 2023년 9월(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다. 총괄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전라남도 공고 “전라남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여수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1)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국내에서 발주한 운동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나목, 다목) 신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포함) 수행 완료 실적(중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을 보유한 업체

※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업체 지분율만 인정(진행 중인 사업 제외)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기관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공동수급업자 포함)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차순위로 즉시 교체됩니다.

2)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나.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1)의 가 목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하고(업체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전라남도 내 업체 참여지분율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44) + 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라.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건 설 (건축,토목,기계)	전 기	소 방	계
비 율	85.00%	10.4%	4.6%	100%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 산정에 참고하기 위한 배치 인·월수에 의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2023. 9. 20 .(수) 09:00~17: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시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장소: 여수시 체육지원과 (☎061-659-3268)

-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진남스포츠센터 2층

라. 제출방법: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e-mail,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참가등록 제출서류

1) 공문서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1부[서식 1]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도장 지참)

3)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분담비율 표시

4)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5)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6) 참가실적 확인을 위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실적증명서(해당페이지) 사본 1부

※ 참가등록 구비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 제출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주회사)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과업수행계획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기술자(건축)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원본 1부(회사명, 기술자 성명 기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첨부

- 사본 7부는 별권(기술자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기재)으로 작성

4)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면접평가서, 업무중첩도) : PDF 파일 형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면 점 : 추후 개별 통보

※ 면접대상자 면접에 불참 시 면접점수 최하점 적용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 : 추후 개별 통보

※ 면접점수는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님

자.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취득한 상위 10개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선정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제2장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44점) + 기술자경력(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5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7. 1.)」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여수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마.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 기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체육지원과(061-659-3268)로,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659-3176)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1]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용역명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신청업체 (공동수급)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1)		
	2)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사무실)	E-mail	
	핸드폰)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체결 현황 1부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9 . . 신청인 : ○○회사 대표 (인)			
여수시장 귀하			

----- 절 --- 취 --- 선 -----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신청서 접수증

용역명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접수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표자 (대표사)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주소			

2023. 9 . .

접수확인 여수시 체육지원과 직 성명 (인)

청 럽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수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

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여수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주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응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3. 질의내용

구 분	내 용	질의사항
I. 일반사항 1.	P1 가. 1) ...	1. ... 2. ... 3. ...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P6 나. (1)	

여수시장 귀하

『 옹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여 수 시
체육지원과

『 옹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일반사항

가. 용역명 : 옹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12개월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옹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할 건설기술용역 업자를 선정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 사업관리 용역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 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

라.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 제8절

마. 용역비 : 859,000천원(VAT포함)

바. 건설사업관리용역 규모

1)공사규모

사업명	공사범위	구 조	연면적(㎡)	비 고
옹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2,496	

2) 용역 범위

- 가) 대상 공사의 건축, 토목, 기계, 조정, 전기, 소방, 통신 등에 대한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
- 나) 재시공 및 자재 승인 시 등 중요사항은 반드시 사전 발주청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승인토록한다.
- 다)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및 하자보수 지원업무
- 라) 국토교통부 고시 2020-987호(2020.12.1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 과업 착수준비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시공단계의 전체 분야 업무
 - 세부과업 범위
- 마) 기타 공사의 범위
 -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사설, 공사홍보판,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등 제반 가설공사
 -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입간선 및 연결공사(도로, 급·배수, 가스, 전기 등) 관리
 -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사 관리
 - 건설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 시험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 체계 수립
 - 계약목적물의 시험운전 및 보증, 인도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 공사와 관련한 지장물 철거 및 이전 공사 관리

단계	업 무 내 용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사업정보관리 시스템의 운영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2)시공 단계
시공 단계	공사착수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도급적정성검토
일반행정업무	
시공 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지원

제2장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본 용역은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 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 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이미 설계된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 1)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 변경 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각종 서식 포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 용역의 업무범위

- 1) 건축, 구조, 안전,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전 분야 건설사업관리
- 2)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 3, 제41조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 3)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
- 4)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 5)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 업무
-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규정 업무
-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 8)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 9) 상주기술자가 투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기술지원 기술자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상호 협의하여 분야별 상주기술자 업무수행
- 10) 관급자재(장비 포함) 관리업무 수행
 - 관급자재(장비 포함) 제작, 검사, 반입설치에 따른 관리 및 보고
- 11) TAB 용역수행 시 추진 결과 보고업무 수행
- 12) 기술지원 기술자(건축, 구조, 안전, 기계, 전기, 토목, 조경, 소방) 업무처리결과 보고업무 수행
- 13)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감리보고서 등에 관한 업무
- 14)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업무

라. 용역의 착수일

- 1) 용역회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 2) 용역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상주기술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 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착수 · 월간 · 분기 · 수시 · 최종보고서 내용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참여기술자 배치표

③ 용역비 산출내역서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착수 전 실시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사전검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상주기술자와 기술지원기술자 각각의 업무 내용을 구분하여 본 공사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PQ심사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절차서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분야별 수행기준, 수행방법, 사용서식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의 구분된 업무처리절차서 작성

⑥ 설계검토 업무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 시 대상공사 설계 과업내용서를 숙지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동 설계도서에 대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시공

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검토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⑧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
증서원본

나. 월간·분기 보고서

- 제출시기 : 매월 및 매분기 말

- 제출방법 : 전자파일(PDF 등)로 작성 제출(발주기관 요청시 출력제본 제출)

다. 수시보고서

- 제출시기 : 필요 시

라. 최종보고서

1) 제출시기 : 준공 시

2) 제출서류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보고서

②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③ 건설사업관리용역 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첩

⑦ 시험운전 보고서

⑧ 건설사업관리일지

⑨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⑩ 준공 시 설계도서 제출

- 설계도면 : A3도면 반접 제본 공종별 각 3부

- 각종 공사시방서 : 3부

- 구조계산서, 기계설비계산서, 전기 및 통신설비계산서 : 각 3부

- 산출서 및 준공내역서 : 3부

- 전산관리용 매체: CD 5개(위 설계도서 전체 수록)

⑪ 기타 공사진행 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 일체

※ 서류 및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 수량 및 방법이 변동될
수 있음

- 마. 최종보고서 2부 및 유지관리지침서 3부
- 바.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용역보고서는 CD(또는 USB)로 작성한다.
- 사.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는 공사별로 작성한다.
- 아. 용역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건설사업관리(감리)수행 내용을 다음 목록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 1) 사업개요
 - 공사개요
 - 2) 공사추진현황
 - 공사계약 및 기성현황
 - 공사현황 사진
 - 주요 공종별 현황사진
 - 이번달 주요공사내용 및 다음달 주요공사 계획
 - 3) 용역수행 현황
 - 용역 개요
 - 용역비 집행현황
 - 하도급 계약 검토
 - 기술지원기술자 근무사항
 - 상주기술자 출근부
 - 4) 기술검토
 - 설계도서 검토사항
 - Shop Drawing 처리현황
 - 설계변경 현황
 - 5) 공정관리
 - 공정관리 개요 및 현황
 - 이번 달 공정현황 및 다음 달 공정추진 계획
 - 6) 시공관리
 - 시공관리
 - 검측대장

-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 주요지시사항 처리현황
 - 7)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서
 - 8) 안전관리
 - 안전관리 조직
 - 안전보건관리 체계
 - 재해발생 현황
 -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 안전관리 현황
 - 9) 종합분석
 - 종합분석 및 평가
 - 잔여공사에 대한 전망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계획
 - 장비 시운전 결과에 따른 T.A.B분석
 - 10) 기타 특기사항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현장 공정과 함께 보고한다.
- 자. 건설사업관리기간 착수부터 용역완료까지 업무 자료 및 도면 자료 일체를 시기별, 업무 폴더별 등 자체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용역완료 시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부(원본파일 및 PDF파일 포함)를 발주처로 제출한다.

제4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와 본 과업지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각 공종별 해당 분야 기술자의 배치는 “입찰공고 시 제시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 예정표”를 참고하여 공사 특성에 맞게 배치해야 하며, 발주처의 필요로 배치 인원 및 기간을 추가 또는 감소 조정코자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상주 기술자 및 기술 지원기술자는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여야 하며, 용역 이행 중 기술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라. 소방기술자는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각각 취득한 2인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술자가 모두 입찰공고 시 제시된 분야별 배치계획에서 정한 소방분야 배치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증액은 없다.

마. 용역계약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시공사의 공정계획과 건설사업관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며 배치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의 승인일을 기술자 배치 시작(착수)일로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계약 금액 증액이 예상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장 건설사업관리단 조직 및 상주기술자

가. 공사 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 및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술자의 배치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나. 상주 기술자 등은 분야별 배치기준에 따른다.

다. 상주 기술자 배치 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 검토 등 발주처 필요 요구에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는 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제출일 기준 1일 이내 발급본)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변경·교체 할 경우에는, 자격과 경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 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운전이 종료되어야 용역이 종결된다. 다만, 사용부서에 대한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준공 후 필요기간 상주하여야 한다.
- 사. 발주기관의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간 또는 기술자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6장 기술지원기술자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등 시공사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기술자와 기술지원기술자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이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 나. 일상적인 기성검사와 행정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외에 상주기술자가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 분석과 시공 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보고 등 현안 사항 처리 전반에 대하여 기술 지원기술자의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기술지원기술자는 발주 기관의 자문요구 또는 기술검토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자문 또는 기술검토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라. 기술지원기술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배치계획 참조)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월1회 이상(소방공사 주1회)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시공자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도서에 대해 KBC2016 등 관련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체 배근상세도, 제작·설치도, 내화상세도 및 부구조체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 건축설비의 설치상세도
 - 가설구조물의 구조체 시공상세도
 - 기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 2) 시공과정에서 구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표 검토
 -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 기타 시공과정에서 구조체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 3)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 수행하여야 한다

제7장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 2) 건설기술자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 3) 발주기관에 용역수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 4)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주기관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 5)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 6)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나.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 용역수행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부실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 1) 제 1 단계 : 주의 또는 경고

- 가) 안전·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2) 제 2 단계 : 건설기술자 교체
- 가) 발주기관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업무수행능력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 바)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 3 단계 : 계약해지 또는 해제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다)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배상

본 공사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또는 감독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술자가 속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기타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 용역수행에 대하여는 관

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8장 건설사업관리 대가

가.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의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분야별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상주기술자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기술지원기술자 출장비’, ‘현지사무원급료’, 예가산정 기준(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일반 조건 제7절.4(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1장 제8절.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투입 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제9장 주요업무 추진지침

가. 회의의 운영

- 1)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 2)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별첨1]과 같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4)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사 등 관련자 간 협의 조정도 록 한다.

5) 회의의 종류

①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사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② 정기회의(공정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사간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 관리책임자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③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자, 시공사,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등의 총괄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시회의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나. 문서 및 자료관리

1) 각종 문서 및 자료 관리는 발주 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 간의 문서, 도면 및 기술 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 절차에 적용하며, 문서 및 자료 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 기호체계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발주 기관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등에 합당한 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사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3)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 기관에 접수시키며,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4)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 관리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 방안으로 원가 절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지수를 분석하여 가치지수가 낮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료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시공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관리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현지 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 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 2) 경미한 설계변경
 - ① 경미한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가 공사비 범위 내에서

우선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시행 후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토록 한다.

- ②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는 공사착수 전에 발주 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공종별, 공정별, 공사비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마. 하도급관리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기관의 시공자에 대가지급시 선금은 10일 이내, 기성(준공금)은 15일 이내에 하도급자 및 노무자에 적정지급 되었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사일정대비 자재관리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사용기자재, 재료, 장비 및 공장 제품 등(이하:“자재”)에 대한 공정별 반입 일정 계획을 공사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이미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 일정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 반입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시공자 및 자재 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자에게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재 등의 반입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시공자가 수립한 장기소요 구매조달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 ②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 ③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 ④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 ⑤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사. 설계도서 검토의 업무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설계도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도서검토를 하여야 하며, 시공 전 설계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설계도서 품질 수준의 향상
- ② 시공품질 수준의 향상
- ③ 설계의 모든 조건을 감안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중 발생하는 공기 재검토 요인 최소화
- ④ 착수단계부터 체계적인 확인절차 수립 시행
- 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적물 품질획득

2) 주요 설계검토내용

①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을 하고, 관련 행정업무 및 문서 작성 등에 대해 발주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주요검토사항

-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문서 등 시설관계규정에 대한 적정성검토
- 민원 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 각 공종별 계획 및 계산 기준(시방서, 지침, 규정 등)적용의 적정성 검토
-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시공성, 유지관리의 적정성 검토
-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 신공법·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및 지도
- 각종 위원회 또는 회의의 운영지원 및 동 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사업비 절감방안 제시
- 도면작성의 적정성 및 표준화 검토
- 시방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월간, 분기, 연간, 최종, 수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소방·조경 각 공종(이하 “각 공종”이라 한다)간 적정성 검토 및 상호 검토
- 각종 영향 평가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계약관련 서류검토 및 확인
- 공사 제외범위(운영부서 시행분 등)의 설계반영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기단축 방안 검토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과업

아. 설계도서 검토자 업무지침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당해 설계가 공사계약문서, 발주기관의 지시 사항 및 관련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설계업무 수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도면검토회의 등 도면검토 관련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회의 등에 있어 발주기관을 지원하며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4) 기술지원기술자(구조기술사·토목)는 공사착수전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도서가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자.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처리

-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서는 시공자의 검토, 조치를 위해 시공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제 및 재검토 필요사항이 충분하다고 명확히 보완되었는지 설계 도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이 상호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서로 상이한 부분을 발견할 시에는 “도면 과 도면”, “도면과 시방서”, “시방서 기재도면 누락”, “내역서와 시방도면” 등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 체크리스트의 작성 및 활용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세부 공종별, 작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공사 중 체크리스트는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직접 체크토록 하며, 이에 대하여 작성자는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 3) 체크리스트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작성하고 시방기준이 표시되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수치화하여 적정여부를 판단 기록한다.

카. 세부 업무수행 지침

- 1) 일반행정 지원분야
 - ① 각종위원회 및 심의 및 자문사항 등 지원
 - ②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 ③ 클레임 방지대책 수립 및 발생 시 처리방안 보고
 - ④ 관련기관 인·허가 등 업무협의 지원

- ⑤ 기타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추가업무
- 2) 구매조달 단계의 업무
 - ① 지급 자재 조달 지원
- 3) 공사진행단계
 -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시공 기술 검토
 - ② 대지 주변현황, 지반조사, 측량성과 검토 및 조치
 - ③ 공사 중 유관기관 시설물 관리, 지장물에 대한 검토
 - ④ 시공자의 인력구성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및 조치
 - 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치
 - ⑥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및 조치
 - ⑦ 시공이 공사 계약문서에 따라 적정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 및 조사
 - ⑧ 신공법 등 공사 시공관리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
 - ⑨ 부당 공사 중지, 재시공 지시, 이행상태 확인 및 조치
 - ⑩ 자재의 반입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 및 조치
 - ⑪ 자재운송, 적치, 반입시의 교통처리계획의 검토
 - ⑫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 ⑬ 공정계획의 검토 및 공정 만회대책 수립 지시 및 확인
 - ⑭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치 및 검사
 - ⑮ 품질관리계획에 의한 품질시험 적정여부 확인 및 조치
 - ⑯ 안전사고예방, 사고 시 복구방안 제시 및 결과보고
 - ⑰ 공사현장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의 분석 및 처리, 안전관리 지도
 - ⑱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시공을 위한 대책의 검토 및 시행
 - ⑲ 환경관련사항의 예방대책 강구 및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 ⑳ 공사의 질적 향상과 원가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치
 - ㉑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확인 및 지시
 - ㉒ 공사단계별 교통처리대책 및 노면복구 계획의 타당성 검토, 지시 감독
 - ㉓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무
 -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에는 상주기술자가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

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 발주기관이 공사 중 필요시(공정, 공법 등) 추가 지시하는 사항
- ②④ 시설공사의 퇴직공제부금의 집행여부를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 ②⑤ 각 공종 분야별 세부 업무
 - 기기의 제작, 설치공사 공정과 인력·장비투입계획 검토 및 확인
 - 운반·설치계획서 검토 및 확인
 - 각 공종별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상호 검토·보완 및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관련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전 검측 확인
 - 제작 및 설치공사가 도면 자재시방서, 설치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제작공장, 공인기관 시험 및 검사 입회,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에 따른 적정성 검토, 확인
 - 장기조달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의 검토
 - 사용자재 및 기기의 규격, 설치위치, 용량 및 방법의 적정성 검토, 확인
 - 대지 내 조경 식재,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식재의 적정성 검토, 확인
 - 관련 기계설비의 TAB 시행의 적정성 확인
 - 각종 부착물 설치위치 사전과약 및 관련부서 간의 협의, 검증 후 시공하여 재시공 사례 미연방지 대책강구
 -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 및 검토와 현장점검 적정성 검토
 - 기타 관련법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종별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설계반영여부 확인 및 반입, 설치, 운용 등을 고려한 시공관리의 적정성 검토, 확인

4) 공사완료단계

- ① 완공도면의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 ②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검토 및 확인
- ③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타 분야와의 연계성 검토 및 확인
- ④ 예비준공검사 준비 및 시행
- ⑤ 준공검사 시행
- ⑥ 각종 기기의 사양서,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외국자재 번역본 등 검토 및 확인

⑦ 인계·인수 관련 준비 및 시행

⑧ 건축물대장 생성 등에 관한 서류작성 및 대행업무

5) 공정·공종별 주요 과업 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토목공사

- 토공사 및 가설 공사의 적정성 검토
- 대지 계획고 산출 및 시공의 적정성 검토
- 진출입 도로공사의 적정성 검토
- 포장공사의 적정성 검토
- 우·오수공사의 적정성 여부
- 주차장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② 철거 및 구조보강공사

- 철거공사 범위 및 계획 적정성 검토
- 석면 등 폐자재 처리대책 적정성 검토
- 철거공사 공법 적정성 검토
- 철거 전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
- 기존구조물 보강공사 적정성 검토

③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

- 시방서, 도면, 계산서 등의 적정성 검토
- 제품생산 공장에 대한 KS 인증 여부의 검토
- 시방, 도면에 의한 규격 치수 및 재질 등의 적합성 검토
-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적정성 검토
- 철골공사의 적정성 검토
- 철근 및 철골의 반입 자재에 대한 공공기관 시험성적 표 확인
- 철근 및 철골재의 보관 상태에 대한 검토 확인
- 기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④ 외벽 및 지붕공사

- 구체 부착철물의 규격품 사용 검토

- 주요부재 설치 위치의 적정성 검토
- 표면 마감재에 대한 줄눈의 폭, 중심간격, 단차 등의 검토
- 표면마감재 설치후의 모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검토
- 유리 설치 시 설치후의 작동상태에 대한 확인
- 실링재 설치에 따른 방수처리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외벽 및 지붕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⑤ 건축마감공사

- 시공상세도 및 설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마감 바탕면에 대한 기울기, 고름, 평활도등에 대한 검토
- 균열 등의 방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각 마감재에 대한 시방 및 도면고의 적합성 검토
- 마감재 부착공법의 적정성 검토
- 마감재 설치에 따른 보양방법의 적정성 검토
- 기타 건축마감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⑥ 기계설비공사

- 장비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냉난방(지역난방 포함) 공조배관공사의 적정성 검토
- 공조덕트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 및 저수조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기구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배관공사(우수배관공사 포함)의 적정성 검토
- 자동제어공사의 적정성 검토
- 가스공사의 적정성 검토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기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⑦ 전기설비공사

- 수변전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전력간선 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동력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조명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전열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접지 및 피뢰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전력, 조명자동제어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종합제어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야간 조명설비 및 규정조도의 적정성 검토
- 설비의 적정성 검토
- 비상전원 및 발전설비의 적정성 검토
- 공동구 전기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옥외 조명시설공사의 적정성 검토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기타 공사사항

⑧ 소방설비공사

- 설계도서의 국내 관련법규 저촉 여부 검토 및 확인
- 옥외설비 소방공사와의 인터페이스 문제 검토 및 조치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소방 전기에 관한 일체의 기술적 사항 검토 및 조치
- 기타 소방설비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⑨ 조경공사

- 선정된 수목의 식재밀도, 규격, 수종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
- 식재방법 및 시방서, 지침 검토
- 타 공종과 Interface 사항 검토
- 식재 후 관리 및 수목상태 점검
- 인입시설의 적정상태 점검
- 지반구조 및 시공 점검
- 유지관리용 장비의 적정여부 검토 및 수불확인 점검
- 기타 조경공사 중요사항 종합적 검토

⑩ 기타공사

- 기타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 전반에 걸쳐 사전검토 및 적정상태

점검

6)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공사 시행단계의 업무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를 준용한다.

① 일반업무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기관 보고
- 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 현장 정기교육
- 시공사의 공정관리 업무 및 독자운영 관리
- 현장 정기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제시 등
- 현장대리인의 교체
- 제3자 손해방지
- 사진촬영 및 보관

② 품질관리업무

- 품질보증계획의 관리
- 품질보증계획의 이행확인
- 중점 품질관리
- 품질시험 · 검사요령

③ 시공관리업무

- 시공계획서의 검토 · 확인
- 시공상세도의 승인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 확인
- 시공확인
- 암반선의 확인
- 특수공법 검토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 지장물 등 철거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④ 공정관리업무

- 공정관리
- 공사 진도 관리
- 부진공정 및 수정공정 만회대책
- 공정보고 등

⑤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 사고처리
- 환경관리

7) 일반행정 업무지침

-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등의 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각 공종별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작업현장에서 공사 계약문서와 시공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공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하되 시간, 능력을 효율적이고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 및 입회의 순서를 정한다.
-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에 사용되는 각종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전력기술인협회)에서 정한 서식과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되, 별도 지정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양식을 사용토록 한다.
- ⑤ 본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용역수행 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 추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새로이 정하는 업무처리 관련 제반 방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⑦ 기술지원기술자은 월1회 이상 현장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자와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황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⑧ 상주기술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체 능력으로는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래 목적인 바와 같이 원활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설계 또는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중단 할 때
- 공사의 현장 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 또는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미달할 때
- 시공자가 과업수행이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설계 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1차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발주기관의 별도 검토보고 지시가 있을 때
- 기타 설계 또는 공사와 관련하여 과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⑨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 반출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8) 일반행정 업무의 지원

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지원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에 수반되는 회의서류 작성 및 회의 운영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조속한 착공을 위해 사업 용지 상의 지장물 이전업무 및 철거업무에 있

어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 각종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출입에 따른 도로교통 혼잡, 현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0장 특기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업무자세

- 1)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관련법령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이권의 개입 또는 향응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및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종료 이후에도 감사기관의 감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감하여야 한다.

나. 민원해결

- 1) 발주기관의 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 2) 발주기관의 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공동으로 민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클레임의 방지 및 처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 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방지계획과 클레임 발생 시 대응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내용서의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복무자세
- ③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기관 또는 감독청에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파악
- ⑥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문제 파악·보고
- ⑦ 기타 공사예산 변경을 수반하거나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제11장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내용(공사별 3부)

-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 나.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 다. 기능점검 항목
- 라. 기능점검 절차

- 마. TEST 장비 확보 및 보정
- 바. 기자재 운전지침서
- 사.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아.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자.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 차. 각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 카.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 타.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별도 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 1) 건축분야(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바닥청소 시 사용해야할 자재 및 유의사항 등)
 - 2) 기계, 전기 기타(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보일러 및 각종 기계, 전기 장비 운영방법 및 유의사항과 제품 카탈로그, 하자 담보기간 이후 제품 이상 시 설치 회사의 연락처 등 명기
- ※ 시설물 인수 후 사용자가 본 매뉴얼만으로도 시설물 운영 및 소모성 부품교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제12장 기타과업내용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용역 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 물량 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 설계 도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도서 검토 후 서면 보고되지 아니한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니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 다. 별도의 시공도 및 시공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발주청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라.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설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승인 후 구조보강공사 또는 개선(대안)공사를 실시(추진)하여야 한다.
- 마.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8호) 제7조(대가의 조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내용을 변경

하여야 한다.

바.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1]

■ 회의의 종류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일일평가회의	매일 09:00	건설사업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책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사 관련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 익일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간정기회의 (공정회의)	매주 화요일 10:00	현장 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상주기술자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 필요시 업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결산 ○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특별회의	사안별로 정함	별도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담당감독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사(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함	별도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업무 관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 회의록 서식

제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발주기관	
참석자: ○ ○ ○		건설사업관리단	
		시 공 자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 고
1	○.공정보고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	
2	○.인력투입현황		
3	○.현안사항		
4	○.업무처리실적		
5	○.향후 수행계획		
6	○.기타사항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및 작성기준



여 수 시
[체육지원과]

목 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I. 총 관	3
II. 분야별 평가기준	4
III.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11
IV. 일반사항	13
V.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참고서식 >
I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 참고서식 >
가. 표 지 (양식 1)	3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확약서 (양식 2)	32
다. 참여기술인 조직 (양식 3)	33
라.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양식 4)	34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5)	37
바. 신용도 (양식 6)	39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7)	41
아. 교체빈도 (양식 8)	42
자. 가.감점 사항 (양식 9)	43
차. 업무중첩도 (양식 10)	45
카.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양식 11)	46
타.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12)	47
파.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13)	48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I. 총괄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평가기준
합계			100	
가. 참여기술인			60.0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3.0	
	경력 실적 교육훈련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13.0 9.0 1.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적용 . 경력 : 해당분야 경력 . 실적 : 직무분야 실적 .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절대평가	24	분야별 기술인
	경력 실적 교육훈련		14 9.0 1.0	. 경력 : 해당분야 경력 . 실적 : 직무분야 실적 . 교육훈련 : 교육훈련
	기술지원기술인	절대평가	10.0	기술지원기술인
	등급 경력 교육훈련		3.0 6.0 1.0	. 등급 : 등급별로 차등평가 . 경력 : 해당분야 경력 .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면접(발표)	상대평가	3	. 참여기술인 면접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절대평가	8.0	. 최근 3년간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
	용역수행성과	절대평가	2.0	. 발주청 용역수행 평가 결과 활용
다. 신용도			15.0	
	영업(업무)정지	절대평가	7.0	. 대상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벌점	절대평가	5.0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건실도	절대평가	3.0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절대평가	10.0	
	기술개발실적		3.0	. 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건수
	투자실적		7.0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마. 교체빈도		절대평가	5.0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3.0 2.0	.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교체건수 합계비율
바. 가·감점	가점 감점	절대평가	-	. 가점과 감점 상계점수 5점 초과 불가

II.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경력	60 23 13	·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 을 배치하여야 함 ※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품질관리, 기술인문 등 수행실적 - 발주청 근무자의 해당 분야 공사·용역감독 및 관리경력 100% 인정					
			공사규모 (VAT제외)	해 당 분 야 경 력				
			300억원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13	12	11	10	9
직무분야 실 적	직무분야 실 적	9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 직무 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 - 발주청 근무자의 건축분야 공사·용역감독 및 관리경력 : 100% 인정 1)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품질관리, 기술인문 등 수행실적 (6점)					
			등 급	직무분야 I 실적				
			특 급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고 급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중 급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6	5.4	4.8	4.2	3.6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교육훈련	1	2) 해당 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품질관리, 기술인문 등 수행실적(3점)								
		등 급	직무분야Ⅱ 실적							
		특 급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고 급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중 급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 자격은 최상위 1종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사의 경우 기술자격 유효성 확인(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 서류가 첨부된 경우 인정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 력	24 14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인 평가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 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평가 제외								
		· 책임기술인 평가 기준과 같고 평가 배점은 아래와 같음.								
		공사규모 (VAT제외)	해 당 분 야 경 력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월 이상	36월 미만 28월 이상	28월 미만 20월 이상	20월 미만 12월 이상	12월 미만			
		점 수	14	13	12	11	10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책임기술인 평가기준과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직무분야 실 적	9	1)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품질관리, 기술인문 등 수행실적 (6점)						
				등 급	직무분야Ⅰ 실적					
특 급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고 급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중 급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초 급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교육훈련	1	2) 해당 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품질관리, 기술인문 등 수행실적(3점)						
		등 급	직무분야Ⅱ 실적					
		특 급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3.0	2.7	2.4	2.1	1.8	
		고 급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3.0	2.7	2.4	2.1		
		중 급	4년 이상		4년 미만			
			3.0		2.7			
		초 급	3년 이상		3년 미만			
			3.0		2.7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 : 0.5						
		기술지원 기술인 등 급	10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				
				3	·기술지원기술인 등급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점 수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 이상		중급 이하			
		3		2				
해당분야 경 력	6	·책임기술인 평가기준과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경 력						
		공사규모 (VAT제외) 300억원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교육훈련 면접 (발표)	1 3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1인에 한하여 적용(건축분야)하며, 기술 자격 유효성 확인(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건축 1 분야)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 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역비(VAT 제외)			
					2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기술인	1점	1.5점	2점					
			※ 단 SOQ 대상 이외의 PQ용역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서면평가 등으로 대체할수 없음.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산정)인 실적을 인정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 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 ※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해당공사규모 (VAT제외)		용역수행실적(단위:억원)			
			100억원 이상	15 이상	10 이상	7 이상	4 이상	4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용역수행성과	2	<p>·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 점수)에 따라 평가</p> <p>*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p>						
			용역평가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별 우리 시 건축분야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평가 결과가 없으므로 일괄 "1.6점" 적용						
다.신용도	영업(업무)정지	15 7	<p>· 최근 1년 간 건설사업관리업무(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와 관련하여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p> <p>- 대상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참여기술인</p>						
			구 분		평가방법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별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참여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감점						
			누계평균 별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 점	0.2점	0.5점	1점	2점	3점	5점
	재정상태 건설도	3	· 재정상태 건설도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구 분		신용평가 등급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실적	10 3	대상 : 건축, 도시, 교통 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 -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특 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금액)에 따른 가중치(신기술, 특허 적용)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5이상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실적금액	20이상	18이상	16이상	14이상	12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인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투자실적	7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율	100%		80%		60%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 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이상	1.5%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0%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 금액 포함									
마. 교 체 빈 도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5	·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 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						
			3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0	2.5	2.0	1	0
	참 여 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Ⅲ.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p>·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당해 해당분야만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p style="text-align: center;"><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 분</td> <td>1.0</td> <td>0.8</td> <td>0.5</td> </tr> <tr> <td>절 감 금 액</td> <td>10억 이상</td> <td>5억 이상</td> <td>1억 이상</td> </tr> <tr> <td>절 감 비 율</td> <td>1.0% 이상</td> <td>0.5% 이상</td> <td>0.1% 이상</td> </tr> </table> <p>※ 1인이 2건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p> <p>※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p> <p>※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p> <p>※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p> <p>※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p>	구 분	1.0	0.8	0.5	절 감 금 액	10억 이상	5억 이상	1억 이상	절 감 비 율	1.0% 이상	0.5% 이상	0.1% 이상
		구 분	1.0	0.8	0.5									
		절 감 금 액	10억 이상	5억 이상	1억 이상									
		절 감 비 율	1.0% 이상	0.5% 이상	0.1% 이상									
		구 분	1.0	0.8	0.5									
절 감 금 액	10억 이상	5억 이상	1억 이상											
절 감 비 율	1.0% 이상	0.5% 이상	0.1% 이상											
<p>※ 1인이 2건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p> <p>※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p> <p>※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p> <p>※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p> <p>※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p>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감점	부패행위 관 련 자	<p>·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 초과하거나 10억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 초과하거나 10억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 이하 : 1점 감점 <p><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IV.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 점수는 참여 용역 업체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 수는 입찰공고에 게시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개별점수(총점)를 통보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건설사업관리” 용도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유사용역 수행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단, 민간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용역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 BTO사업 등은 당해사업 발주청 확인이 있는 경우 실적을 인정한다.
5. 발주청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발생 시
 - 나.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6.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pm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공동도급으로 지역용역회사가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 지역용역회사 중에서 반드시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1명이상 투입. 미투입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0점 처리. 단,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합이 1명일 경우 제외)
 예) $\pm 10\%$ 포인트 범위 내 조정 예시

- 6명 투입예정 용역사업에 A사70% B사30% 참여할 경우

· A사(60%~80%) = 3.6명~4.8명 \approx 4명~5명

· A사(20%~40%) = 1.2명~2.4명 \approx 1명~2명

7.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단 참여업체 중 최고 득점자의 합계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9.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한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1.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서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여수시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 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 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또는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라. 여수시는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현장 중복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사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나”, “다”의 설계용역 중복참여 평가 시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6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사업(발주청 확인서류 첨부시에만 인정) 또는 사후환경조사용역에 참여중인 경우에는 중복배치기간에서 제외한다.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14. 본 평가기준상의 감점기준 사항을 제외한 ‘작성서식 미준수’ 등 임의의 감점사항은 적용할 수 없다.

1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V.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자 평가대상은 책임건설기술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인(건축(안전), 토목, 기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 3인으로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건축(고급)]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인 [건축(초급) 1, 토목(중급) 1, 기계(중급) 1, 전기(중급) 1]

3) 기술지원기술인 3인 [건축(구조), 기계, 전기]

단,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 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시공단계 분야별 기술자 중 상주 기술자 1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반드시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여야 한다.

-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라. 여수시는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하며, 경력은 해당 직무 분야별로 하되, 건축은 전문 분야(구조)로 평가한다.

- 기술지원기술인은 공고 시 해당 전문분야를 제시한 경우 해당 전문분야 실적이 전혀 없는 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기술지원기술인 “0점” 평가. 단, 공고 시 직무분야로 제한한 경우 직무분야에 포함된 전문분야 모두 인정
-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사.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 범위는 다음과 같은

-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은 건축 분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나목 또는 다목 운동시설’의 용도 인정

2) 위의 경력 범위 산정 시 1)의 용도를 포함한 복합 용도의 건축물도 100% 인정

3) 해당 분야 이외의 건축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

4) 해당 분야 경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이 포함된 건설관리 사업의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예:단순 공항·항만공사 불인정, 軍.LH의 경우도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경력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

※ 단, 책임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분야의 경력(건설사업관리, 설계, 시공, 감독 등 건설공사 업무경력. 단, 계획, 측량업무 등은 제외)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아. 직무분야는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자.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와 직무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 4)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2.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수행성과 평가

가.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 「주택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범위

-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은 건축분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나목 또는 다목 운동시설'의 용도 인정

나.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건축분야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해당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text{억원} \times 0.6) + (100\text{억원} \times 0.4) = 160\text{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 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라.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 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라. 용역수행성과

- 1)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내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분야의 모든 용역평가 결과 점수를 활용하여 신청자 수 별 평가등급 배분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이면 평균점수로 산정)

* 용역 평가받을 당시 참여지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동일한 평가점수 적용)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용역평가 결과 점수에 당해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참여업체 중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나

해당 분야에 참여업체 전체가 실적이 없는 경우 “1.6”의 점수를 부여
 예시)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1)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및 배점(실적 없는 업체 “1.8”점 부여의 경우)

구분	컨소시엄	참여①			참여②		참여③		
	참여업체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참여지분	40%	30%	30%	60%	40%	60%	20%	20%
용역평가 점수	95.8	95.2	93.3	96.8	실적×	96.0	94.5	실적×	
최종 적용점수	2.0	2.0	1.8	2.0	1.8	2.0	1.8	1.8	

(2)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평가점수

- 참여① : $(2.0 \times 0.4) + (2.0 \times 0.3) + (1.8 \times 0.3) = 1.94$ 점
- 참여② : $(2.0 \times 0.6) + (1.8 \times 0.4) = 1.92$ 점
- 참여③ : $(2.0 \times 0.6) + (1.8 \times 0.2) + (1.8 \times 0.2) = 1.92$ 점

3) 참여업체는 발주청에서 평가받은 용역평가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확인하여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등이 발견될 시 용역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한다.

3. 신용도 평가

가.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 상 감리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은 1월로 계산)

나. 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분야별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다. 재정상태건실도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 투자실적 참여실적 평가

가. 기술개발활용실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의한

건축, 도시, 교통 분야의 신기술, 특허

-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신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투자실적

-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말한다.
-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

업에 최근 3년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신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60% 로 평가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 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5) 평 가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5. 교체빈도의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 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의 평가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만, 공동도급 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 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pm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7.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공사비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서 발주청으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 중 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I.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 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II.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III.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p>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발 주 기 관 장 직인</p>								

【참고사항】

건설기술인의 범위 (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3) 산업계측제어	2) 건축전기설비
다. 토목	1) 토질·지질 3) 항만 및 해안 5) 철도·삭도 7) 상하수도 9) 토목시공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 토목구조 4) 도로 및 공항 6) 수자원개발 8) 농어업토목 10) 토목품질관리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3) 건축시공 5) 건축품질관리	2) 건축기계설비 4) 실내건축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3) 가스	2) 소방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3) 소음진동 5) 자연환경 7) 해양	2) 수질관리 4) 폐기물처리 6) 토양환경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3) 건설마케팅	2) 건설기획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자료 작성기준

I.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전심사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거 적격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PQ서류는 본 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개요

- 1)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2)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평가서 작성

- 1) 규격 및 제본
 - 규격 : A4(10절)
 - 지질 : 표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흑백)
 - 제본 : 양면 좌철
- 2) 제출부수 : 2부(원본1부 포함)
- 3) 제출장소 : 여수시 체육지원과

라.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마. 참여 및 평가 기술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 사 명	공사비 (억원)	공사 기간 (개월)	참 여 기 술 인		평 가 기 술 인	
			책 임 기술인	분 야 별 기 술 인	책 임 기술인	분 야 별 기 술 인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92.2	12	건축 (고급)	건축(안전, 초급) 토목(중급) 기계(중급) 전기(중급)	건축 (고급)	건축(안전, 초급) 토목(중급) 기계(중급) 전기(중급)

※ 면접 평가 대상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

2) 기술지원기술인

- 참여기술인 : 건축(구조), 기계, 전기

- 평가기술인 : 건축(구조), 기계, 전기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배치 시 실격

※ 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 기술인만 제출. 단,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은 업무중복도를 확인하므로 제출

※ 평가기술인 선정 시 당해용역과 무관하거나 과업비중이 경미한 분야(5~10% 이하)는 제외. 단, 해당용역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공정인 경우 가능

※ 사업특성과 기술인 용역수행 형태를 고려하여 참여·평가분야 선정

ex : 안전관리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항상 수행하는 업무분야이므로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배정. (특별한 공정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일반적인 경우 금지)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시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입찰에 참가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한다.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5)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I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참고서식 >

양식 1

가. 표 지

응 천 건 설 국 민 사 체 육 업 센 터 관 리 건 립 공 사 용 역	<h1>응 천 국 민 체 육 센 터 건 립 공 사</h1> <h2>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h2> <p>-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p>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서	2023. . . .
(주) (주) ○ ○ ○ ○ ○ ○ ○ ○ ○ ○	(주) ○ ○ ○ ○ (주) ○ ○ ○ ○

양식 2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확약서

본인은 응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하고자 별첨과 같이 심사서를 제출하오며, 본 심사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첨 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사용인감계 1부.
4. 공동수급협정서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023.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여수시장 귀하

양식 3

다. 참여기술인 조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 분	성 명	소 속	자 격	<u>생년월일</u>	비고
책 건 관 기	임 업 리 인				
분 건 관 기	야 설 사 술				

2) 기술지원기술인

구 분	성 명	소 속	자 격	<u>생년월일</u>	비고

양식 4

라.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1) 총괄

구분	성명	연령	학력 (학위)	전공	자격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비고
					종류	취득일		실적1	실적2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책 임										
분 야 별										
○ 기술지원										

2) 개인 별

○ 해당분야 경력

참여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기술인			○ ○ 분야		성 명	
년 도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 업무	참여 직위	참여당시 소속회사	발주처	비고	
		년월일 년월일 (일)					해당 분야	
							기타	

○ 직무분야 실적

참여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기술인			○ ○ 분야		성 명	
년 도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 업무	참여 직위	참여당시 소속회사	발주처	비고	
		년월일 년월일 (일)						

(주) . 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확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경력
증명서 첨부

. 참여기간 :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일)

3) 기술인 교육훈련

성 명	교육훈련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주)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4) 기술인의 기술자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자격취득일	비 고
책 임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인				
기 술 지 원 기 술 인				

(주) .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양식 5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용역명	용역 개요	용역기간 (개월)	적용기간 (개월)	계약금액 (천원)	참여비율 금액 (천원)	사 업 인정율	유사용역 금액 (천원)
○ 완료된 사업								
소계								
전체								
설계								
시공								
○ 진행중인 사업								
소계	작성요령 : 상 동							

(주)

-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실적
 - . 완료된 사업 : 전체 및 차수준공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용역금액
 - 공동도급인 경우 해당 지분액을 기재하되 공동도급 비율 및 총 용역금액 기재
 - . 진행중인 사업 : 용역금액 및 기간을 전체 및 차수 준공분으로 구분하되 선금
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에 해당
하는 용역금액
 -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해당 지분액을 기재하되 공동도급 비율, 총 용역금액,
차수별 용역금액 기재
 - . 완료 및 진행중인 사업 증빙서류 첨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경력관리수탁
기관 및 관리위탁기관 발급)
- 하도급일 경우 발주처와 원도급 회사를 명시하고, 계약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
. 사본 첨부(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액 기재 및 사본 첨부)

2) 용역수행성과

구분	용역명	발주청	용역기간	평가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 . 건축 분야에 대해서만 작성하되,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 . 참여업체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첨부.
- . 최근 5년 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에서 수행한 모든 용역평가 결과 작성
- . 별도로 확인한 결과, 자료의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 용역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양식 6

바.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용역 회사	용역명	업무정지 처분기간 (개월)	제재기관 및 사유		참 여 기 술 인		
			기관명	사 유	성 명	분 야	기 간

(주)

- .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 당업자로 지정되어 영업(업무)정지를 받는 기간에 따라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평가
- .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영업(업무)정지 기간이 없는 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별점

구 분	별 점 부과기관	사 유	별 점	누계 평균 별 점	비 고
참 여 업 체					
참 여 기 술 인					

(주) . 위탁업무수행기관 발행본 별점현황 첨부

3)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1. 회 사 명		
2. 설 립 년 도		
3. 자 본 금		
4. 신용평가기관		
구 분	평 가 등 급	비 고

(주)

-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 7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 개발실적

구분	건명	기술종류	내용	보호기간	등록권자	점수
신기술						
계						

○ 활용실적

구분	건명	보호기간	기성시점	활용실적		점수
				건수	금액	
신기술						
특허						
계						

- (주) . 신기술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기재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참여 지분율 기재
 . 대상 : 건축, 도시, 교통분야 관련 기술

2) 투자실적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① 20	② 20	③ 20	평균 (①+②+③)/3
건설기술개발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비율				

- (주) . 최근 3년간 건설부분의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비율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 제출된 자료의 년수로 평균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기재
 - 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제외

양식 8

아. 교체빈도

○ 참여업체

참 여 업 체	교 체 율	배 치 총 원	교 체 총 원
	%	상 주 인 기술지원 인	상 주 인 기술지원 인
	%	상 주 인 기술지원 인	상 주 인 기술지원 인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상주(기술지원)기술인 ○ ○ 분야				성 명			
사업명	사업개요	총 사업기간	참여기간	담당 업무	교체일	교체사유	발주처	비고
		년월일 년월일 (개월)	년월일 년월일 (개월)					

주)

- .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의 시공단계에 참여한 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하며, 참여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 .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하고 교체사유는 군 입대, 부상(○개월 요양), 기타로 표기
- . 교체빈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교체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회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9

자. 가.감점

1) 공사비 절감 기여기술인

기술인	발주기관	용역명	용역일시	절감내용		비고
				절감금액	절감비율	

. 발주처에서 확인된 증빙서류 첨부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신규 고용인원(명)	직전년도 평균 고용인원(명)	신규 고용율(%)	참여지분율(%)	비고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 자료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3) 부패행위 관련자

구 분	형사처벌일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부과기관	비고
참 여 업 체				
참여기술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부패행위를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소속업체에 대해 감점

양식 10

차. 업무중첩도

참여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기술인			○ ○ 분야	성 명	
구 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담당 업무	발주처	비고
건설 사업 관리			년월일 년월일 (개월)			
설계						

주)

.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등)에 대하여 작성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 포함). 단, 비평가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제외하며 투입시기에 발주청에서 적정여부 검토

양식 11

카.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내용	점수	비고
합계		100			
1.참여기술인		60.0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3.0			
	경 력 실 적 교 육 훈 련	13.0 9.0 1.0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4			
	경 력 실 적 교 육 훈 련	14 9.0 1.0			
	기술지원기술인	10.0			
	등 급 경 력 교 육 훈 련	3.0 6.0 1.0			
	면접(발표)	3	기재하지 않것	-	
2.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8.0			
	용역수행성과	2.0			
3.신 용 도		15.0			
	영업(업무)정지	7.0			
	벌점 재정상태건실도	5.0 3.0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0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3.0 7.0			
6.교체빈도		5.0			
	참 여 업 체 참여기술인	3.0 2.0			
가감점		-			

※ 필요시 세부평가서 첨부

양식 12

타.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출자비율		비고 (분야)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분담내용		비고 (분야)
					업종	비율	
계					100%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 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여수시장 귀하

접수번호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건축분야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2023. .

용역수행계획서			
성명	(기재하지 않음)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속	(기재하지 않음)		
주소	광역시·도까지만 기재		
년월일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 現 재직사항(소속회사 표기 금지)은 기재하지 않음			
자기소개 및 용역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씨체 : 자유 ○ 글씨크기 : 자유 ○ 책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각각 5매 이내 별도 작성 합본 제출 ○ 총 10매 이내로 작성(책임 5매 이내, 분야 5매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원본)와 합본 1부, 별권제출(업체명 미표기) 8부, 무선단면상철 ○ 원본에만 업체명, 성명, 소속 등 기재 ○ 흑백으로만 작성하며, 익명성을 확보하여야 함(회사명 미기재) ○ 면접평가시 주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역사업의 이해도 - 해당용역과 관련 전문경험 - 설계도서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 사업추진 관리방안 제시(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계획) - 용역관련 제안사항(문제점 및 개선대책, 사후관리방안 등) 			

자기소개 및 용역수행계획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항 목 (p.00)

질의내용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
을 구분하여 표기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2023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산106, 산106-1, 산106-2번지 건축신고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3. 9. 4.

여 수 시 장

1. 위 치 : 돌산읍 둔전리 산106, 산106-1번지
2. 도로면적 : 150m²
3. 도로길이 : 36m
4. 도 로 폭 : 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3,802	150	
	돌산읍 둔전리	산106	임야	3,537	67	
	돌산읍 둔전리	산106-1	임야	265	83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공 고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수국가산업연관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현행) 2023년 12월 31일 → 연장) 2028년 12월 31일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예고기간: 2023. 9. 7. ~ 9. 12.(5일)

5. 의견제출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공영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공영개발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소: 우)59761 여수시 신월로 648(신월동) 국동임시별관, 공영개발과
- E-Mail: whitechw@korea.kr
- 전 화: 061-659-4589
- F A X: 061-659-58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 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 다.	제3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 다.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1.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및 공고내용

- 사업명칭: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 사업기간: 2022. 10. ~ 2027. 1.
-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전면 해상 일원
- 사업내용: 준설토 투기장 조성
- 사업시행자: 해양수산부(사업관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보상업무: 여수시
- 편입면적: 661,885m²(국,공유지 32,770m² / 사유지 629,115m²)
- 물건조서 및 용지도: 공람장소 비치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공람기간: 2023. 9. 11. ~ 2023. 9. 25.(14일)
- 공람장소: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 의견제출기간: 2023. 9. 11. ~ 2023. 9. 25.(공람기간 내)
-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붙임]

-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6),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061-659-45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

사업명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사업장 위치	전남 여수시 을촌면 여동리 전면 해상 일원		
사업시행자	해양수산부		
관련지번 (소유지번)	면(동)	리	번지
의견제출자	<input type="checkbox"/> 소유자 <input type="checkbox"/> 관계인 (해당사항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상 현주소)	연락처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여수시장 귀하

생활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음향·영상장비 운용관리) 모집 공고

2023년도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내 음향·영상장비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여 수 시 장

1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3. 9. 6.(수) ~ 2023. 9. 15.(금) (10일간)

나. 접수기간 : 2023. 9. 13.(수) ~ 2023. 9. 15.(금) 18:00까지 (근무시간 내)

다. 접 수 처 : 여수시 흥국로 17(학동)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4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전자우편 (대리접수 불가능)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접수메일 : skzkok4187@korea.kr)

2 채용 및 근무조건

채용신분	채용예정부서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기간제근로자	문화예술과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1명	2023. 10. 10. ~ 2023. 12. 31. (09:00 ~ 18:00 / 1일 8시간, 화~토)

보수	기타
일 83,040원 (생활임금 일 6,080원 포함)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름

3

직무기술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내 음향·영상 장비 운용 및 관리 - 대관 업무 시 음향 및 영상장비 운용업무 보조역할 - 음향 및 영상장비 관리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시민지향마인드 ○ (직무역량) -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업무 이해도 및 책임성 -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필요 지식 (개인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향 및 영상 장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 ○ 친절한 시민응대 	
자격요건	관련분야 : 음향·영상장비 운용 및 관리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마감일(2023. 9. 15.)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
경력 및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자 - 6개월 이상 관련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무대음향 3급 이상 소지자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4 채용분야 가산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서류, 면접 각각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서류, 면접 각각 적용)	
장애인	평가항목별 10% (서류전형 적용)	

5 응시제한

가.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회피하여 공정한 채용 시험을 방해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 응시제한을 받은 자(해당 응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응시 제한)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및 평가표에 따른 서면심사.

단, 응시인원이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소수점은 올리며 전부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① 자기소개서					
점수	2점	4점	6점	8점	10점
내용	4개 평가 지표 중 어떤 것도 잘 드러나지 않음	4개 평가 지표 중 1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중 2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중 3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모두 명확히 드러남
② 직무수행 계획서					
점수	0점		5점		10점
내용	2개 평가 지표 중 어떤 것도 잘 드러나지 않음		2개 평가 지표 중 1개가 명확히 드러남		2개 평가 지표 모두 명확히 드러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9. 20.(수)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23. 9. 26.(화) 14:00 예정 ※ 일정 변동 시,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시험 평정표

평가항목(5개항목)	점수	비고
계	50점	
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 ※ 면접시험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면접 심사기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다. 최종합격자 : 2023. 10. 5.(목)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7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기준으로 생년월일 및 현재 주소가 나오게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마. 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확인서 1부
 (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관계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 또는 회피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바.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사. 자격증명서 각 1부(원본 제시,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

8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스스로 기재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 선발을 위해 여수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채용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해당 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수시 비정규직 채용 응시에 제한됩니다.
- 라.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되 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전 기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된 날의 14일 이후부터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 마. 원서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담당자(☎ 061-659-242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채용분야		접수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지원직무		
현 주 소	도로명주소 번호 앞까지만 기재(동호수 등 세부내역은 미기재)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가점항목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해당자만 체크)			
2. 교육사항(1)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교육 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사항(2) *지원자격 요건상 학위 취득이 필수적인 경우				
전공분야	학위 취득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3. 자격사항 *직무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입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력사항 *직무관련 경력사항만 기입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역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 원 자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응시원서 등 제반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뒷면>

1.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2.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3. '제반서류'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 ① 응시원서 : 접수번호를 제외하고 인적사항은 필수로 기재하되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며 응시자 이름과 (인) 부분에 서명하여 제출
- ② 이력서 : 인적사항 및 해당사항 전부 입력
- ③ 자기소개서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④ 직무수행계획서(해당분야)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⑤ 경험 및 경력기술서(해당분야)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동의 체크 및 본인 서명
- ⑦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 : 친인척 기준을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입

【 붙임서류 】

1.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생년월일 및 현주소만 나온 자료)
 2. 경력증명서 각 1부(경력보유자, 경력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제시, 자격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 붙임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이 력 서

(1쪽)

<필수>			
성 명	(한글)		
주 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취 득 일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기타실적, 능력 등)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등록번호
취업대상자 및 저 소득층 여부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 호대상자

※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여부는 해당항목에 '○' 로 표시 후 증빙자료 첨부

【붙임 3】

자기소개서

(2쪽)

○ 각 항목에 대하여 600자 이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칸을 별도로 눌러 활용가능>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본 항목에 따라 기술하고 지원동기, 성격 및 가치관, 업무의 전문성, 앞으로의 다짐 등 자신의 생각 등이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작성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학교명, 출신지, 예전 직장, 부모직업 등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거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갑작스럽게 발생한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활용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3쪽)

3. 과거 업무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이견이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업무에 대해 가장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직무수행계획서

(4쪽)

○ 주요내용1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담당예정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업무 추진전략(계획)의 충실성과 적실성을 평가하므로 내실 있게 작성 바랍니다.>

(유의사항) 작성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내용부실, 응시분야와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활용 가능

1. 응시분야 직무수행 추진계획

2. 응시분야 직무수행 추진전략

【붙임 5】

경험 및 경력기술서

(4쪽)

○ 작성요령

- 이력서에 기재한 직무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음

1) 소속 조직 /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

2) 주요 활동 내용 및 성과(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을 나누어 작성 기재)

3) 활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행동

4) 본인의 성과(업무 추진)으로 인해 조직에 기여한 내용 및 기여 정도

5) 지원분야 업무 수행 시, 본인의 강점과 기여할 수 있는 측면

【붙임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여수시
이용 목적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공직자 이해관계 확인 포함)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2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 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

2023. . .

성 명

(서 명)

여수시장(읍면동장) 귀하

【붙임 7】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관계 확인서

○ 성 명 :

○ 응시번호 :

○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현황

* 배우자, 본인의 4촌 이내 친족,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별첨 참조)

연번	친인척 성명	친인척 직급(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1			
2			
3			
해당 없음			

상기 본인은 공정한 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시청 내 친인척현황 조사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으며 해당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수시 비정규직 채용에 응시가 제한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하며 서약합니다.

2023. . .

작성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7-1】

작성 대상 친족 기준

구분		0촌	1촌	2촌	3촌	4촌
본인	친가	부부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 및 그 배우자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형제의 자녀 (조카)	○백부, 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외조부모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배우자	친가		○부모	○조부모 ○형제 및 그 배우자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형제의 자녀 (조카)	○백부, 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외조부모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916번지 건축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3. 9. 5.

여 수 시 장

1. 위 치 : 돌산읍 평사리 928-68, 913, 916번지
2. 도로면적 : 183m²
3. 도로길이 : 61m
4. 도 로 폭 : 5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4,643	183	
	돌산읍 평사리	928-68	임	1,513	33	
	돌산읍 평사리	913	답	2,093	106	
	돌산읍 평사리	913	답	1,037	44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산318-112번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돌산읍 평사리 산318-112	172.8	10	1,728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

여 수 시 장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600, [] 1/1,200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6일
여수시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 환경에너지시설 건설공사

나. 사업주체 : (주)동명테크

다. 시 공 자 : (주)에코비트위터

라. 감 리 자 :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진달래길 20-3(중흥동 1802번지)

2) 내 용 :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처분시설) / 지하1층, 지상4층 - 1동,
지상5층 - 1동, 지상1층 - 2동 / 연면적 4,716.57㎡

3) 공사기간 : 2023. 9. 1. ~ 2025. 1. 24.

4) 순공사비 : 49,954,300,000원(VAT 포함)

5) 안전점검 비용 : 10,032,000원(VAT 별도)

바. 건축허가일 : 2023. 7. 12.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향타 및 향발기(2회)
- 높이 2m이상 흠막이지보공(2회)
- 높이 5m이상인 동바리(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3-2425호

나. 결정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9. 6.(수) ~ 2023. 9. 12.(화) 09:00 ~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3. 9. 13.(수)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 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3. 9. 15.(금) 13:00 ~ 16: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3. 9. 18.(월) 14:00~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과(☎061-659-41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 평가점수 × 1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을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에 따라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여 수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용역내용 : 건설(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금액 : 금2,445,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분 : 886,123,000원)
- * 1차분 용역비용은 변경 될 수 있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다.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여수시 웅천동 1865-1번지(이순신 공원 내 바위산 전망대 앞)
- 규 모 : 연면적 5,605㎡, 지상1층, 공사비 208억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라. 시행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문화유산과

마. 입찰예정시기 : 2023년 9월(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 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총괄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전라남도 공고 “전라남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따라 여수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1)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국내에서 발주한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라목) 신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포함) 수행 완료 실적(중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을 보유한 업체

※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업체 지분율만 인정(진행 중인 사업 제외)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기관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

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공동수급업자 포함)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차순위로 즉시 교체됩니다.

2)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나.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1)의 가목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하고(업체별 최소 지분을 5% 이상)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전라남도 내 업체 참여지분을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 + 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라.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건 설 (건축,토목,기계)	전 기	통신	소 방	계
비 율	72.53%	19.51%	6.63%	1.33	100%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 산정에 참고하기 위한 배치 인·월수에 의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2023. 9. 21.(목) 09:00~18: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시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장소: 여수시 문화유산과 (☎061-659-4524)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문화유산과 시립박물관팀

라. 제출방법: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e-mail, 팩스, 쿼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참가등록 제출서류

1) 공문서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1부[서식 1]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도장 지참)

3)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분담비율 표시

4)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5)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6) 참가실적 확인을 위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실적증명서(해당페이지) 사본 1부

※ 참가등록 구비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 제출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주회사)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과업수행계획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기술자(건축)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원본 1부(회사명, 기술자 성명 기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첨부
- 사본 7부는 별권(기술자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기재)으로 작성

4)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면접평가서, 업무중첩도) : PDF 파일 형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면 접 : 추후 개별 통보 ※ 면접대상자 면접에 불참 시 면접점수 최하점 적용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 : 추후 개별 통보 ※ 면접점수는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님

자.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취득한 상위 10개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선정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제2장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44점) + 기술자경력(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5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7. 1.)」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여수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마.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 기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문화유산과(061-659-4524)로,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659-3191)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1]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용역명	여주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신청업체 (공동수급)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1)		
	2)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사무실)	E-mail	
	핸드폰)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체결 현황 1부		
여주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2023. 9 . . 신청인 : ○○회사 대표 (인) </div>			
여수시장 귀하			

----- 절 --- 취 --- 선 -----

여주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신청서 접수증

용역명	여주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접수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표자 (대표사)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주소				

2023. 9 . .

접수확인 여수시 문화유산과 직 성명 (인)

청 럽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수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여수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주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여수시 공고 제2023-256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에 따라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여 수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용역내용 : 건설(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금액 : 금2,445,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분 : 886,123,000원)
- * 1차분 용역비용은 변경 될 수 있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다.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여수시 웅천동 1865-1번지(이순신 공원 내 바위산 전망대 앞)
- 규 모 : 연면적 5,605㎡, 지상1층, 공사비 208억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라. 시행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문화유산과

마. 입찰예정시기 : 2023년 9월(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 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총괄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전라남도 공고 “전라남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따라 여수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1)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국내에서 발주한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라목) 신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포함) 수행 완료 실적(중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을 보유한 업체

※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업체 지분율만 인정(진행 중인 사업 제외)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기관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

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공동수급업자 포함)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차순위로 즉시 교체됩니다.

2)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나.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1)의 가목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하고(업체별 최소 지분을 5% 이상)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전라남도 내 업체 참여지분을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 + 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라.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건 설 (건축,토목,기계)	전 기	통신	소 방	계
비 율	72.53%	19.51%	6.63%	1.33	100%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 산정에 참고하기 위한 배치 인·월수에 의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2023. 9. 21.(목) 09:00~18: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시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장소: 여수시 문화유산과 (☎061-659-4524)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문화유산과 시립박물관팀

라. 제출방법: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e-mail, 팩스, 쿼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참가등록 제출서류

1) 공문서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1부[서식 1]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도장 지참)

3)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분담비율 표시

4)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5)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6) 참가실적 확인을 위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실적증명서(해당페이지) 사본 1부

※ 참가등록 구비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 제출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주회사)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과업수행계획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기술자(건축)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원본 1부(회사명, 기술자 성명 기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첨부
- 사본 7부는 별권(기술자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기재)으로 작성

4)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면접평가서, 업무중첩도) : PDF 파일 형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면 접 : 추후 개별 통보 ※ 면접대상자 면접에 불참 시 면접점수 최하점 적용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 : 추후 개별 통보 ※ 면접점수는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님

자.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취득한 상위 10개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선정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제2장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44점) + 기술자경력(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5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7. 1.)」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여수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마.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 기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문화유산과(061-659-4524)로,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659-3191)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1]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용역명	여주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신청업체 (공동수급)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1)		
	2)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사무실)	E-mail	
	핸드폰)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체결 현황 1부		
여주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2023. 9 . . 신청인 : ○○회사 대표 (인) </div>			
여수시장 귀하			

----- 절 --- 취 --- 선 -----

여주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신청서 접수증

용역명	여주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접수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표자 (대표사)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주소				

2023. 9 . .

접수확인 여수시 문화유산과 직 성명 (인)

청 럽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수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여수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주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3. 질의내용

구 분	내 용	질의사항
I. 일반사항 1.	P1 가. 1) ...	1. ... 2. ... 3. ...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P6 나. (1)	

여수시장 귀하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3. 질의내용

구 분	내 용	질의사항
I. 일반사항 1.	P1 가. 1) ...	1. ... 2. ... 3. ...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P6 나. (1)	

여수시장 귀하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1.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1. 11. 25. ~ 2023.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도시계획(도로)시설사업 사업명 여수상공회의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봉계동 일원	○ 면적 및 규모 - 면적: (기정) 1,105㎡ (변경) 1,108㎡ - 규모: L=80m, B=13m	여수시장/ 여수시 시청로 1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여수상공회의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여수시 도로과	2023. 9. 11. ~ 2023. 9. 25.(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9. 11. ~ 2023. 9. 25. (14일간)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4. 토지 및 지장물조서: 붙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사(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합계				14.295	1.105						기정
합계				1.108	1.108						변경
1	여천동	396-5	답	89	88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5*(**무동)				기정
	여천동	396-5	답	89	89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5*(**무동)				변경
2	여천동	393	답	89	89	삼일중고**판매주식회사	봉계동 7*7	압류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변경
								소유권이전 청구권리가등기	주식회사 **종합건설	광주 동구 *남로 5가 1-*	변경
								가압류	**보증보험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양동 1422-1*	변경
								가압류	**리스금융 주식회사	광주 동구 *남로 5가 18*	변경
								압류	**연금공단 (여수지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천동 7-1*	변경
								압류	**복지공단 여수지사	여수시 *수로 12*	변경
								압류	국-처분청 여수**서장	여수시 *수영로 948-*	변경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수시 *무동 502-1*	기정
								근저당권설정	**사업 공제조합	서울영등포구 *의도동 15-2*	기정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수시 *양동 71*	기정								
3	여천동	871-15	대	378	3	국	기획재정부				기정
	여천동	871-17	대	5	5	국	기획재정부				변경
4	여천동	871-16	도	5,905	66	국	건설부				기정
	여천동	871-18	도	67	67	국	건설부				변경
5	봉계동	811-5	도	6,001	67	국	건설부				기정
	봉계동	811-14	도	68	68	국	건설부				변경
6	봉계동	741-5	대	47	5	김*곤	전라남도 여수시 *곡길26-*(**원동)				기정
	봉계동	741-11	대	4	4	김*곤	전라남도 여수시 *곡길26-*(**원동)				변경
7	봉계동	741-7	도	225	187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5*(**무동)				기정
	봉계동	741-12	도	190	190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5*(**무동)				변경
8	봉계동	742-2	도	228	205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5*(**무동)				기정
	봉계동	742-3	도	196	196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5*(**무동)				변경
9	봉계동	744-2	도	600	391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5*(**무동)				기정
	봉계동	744-4	도	396	396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5*(**무동)				변경
10	봉계동	726-113	입	12	2	김*희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47,**2동***호 (*천동,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지상권	여수**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향단지로21* (**산동)	기정
								근저당권	육과**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과면 *하로 14*	
	봉계동	726-178	입	2	2	김*희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47,**2동***호 (*천동,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가등기권자	박*진	전라남도 여수시 ***8로 23, **3동 ***5호(*천동,**여수웅천*단지)	변경
11	봉계동	726-76	전	717	1	김*희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47,**2동***호 (*천동,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지상권	여수**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향단지로21* (**산동)	기정
								근저당권	육과**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과면 *하로 14*	
	봉계동	726-177	전	1	1	김*희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47,**2동***호 (*천동,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가등기권자	박*진	전라남도 여수시 ***8로 23, **3동 ***5호(*천동,**여수웅천*단지)	변경
12	봉계동	726-116	입	4	1	김*희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47,**2동***호 (*천동,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지상권	여수**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향단지로21* (**산동)	기정
								근저당권	육과**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과면 *하로 14*	
봉계동	726-179	입	1	1	김*희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47,**2동***호 (*천동,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가등기권자	박*진	전라남도 여수시 ***8로 23, **3동 ***5호(*천동,**여수웅천*단지)	변경	

도로 지정 (변경)공고

여수시 호명동 788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변경)합니다.

1. 위 치 : 여수시 호명동 813, 816, 1751번지
2. 도로면적 : 321m²
3. 도로길이 : 현황도 참조
4. 도 로 폭 : 6~7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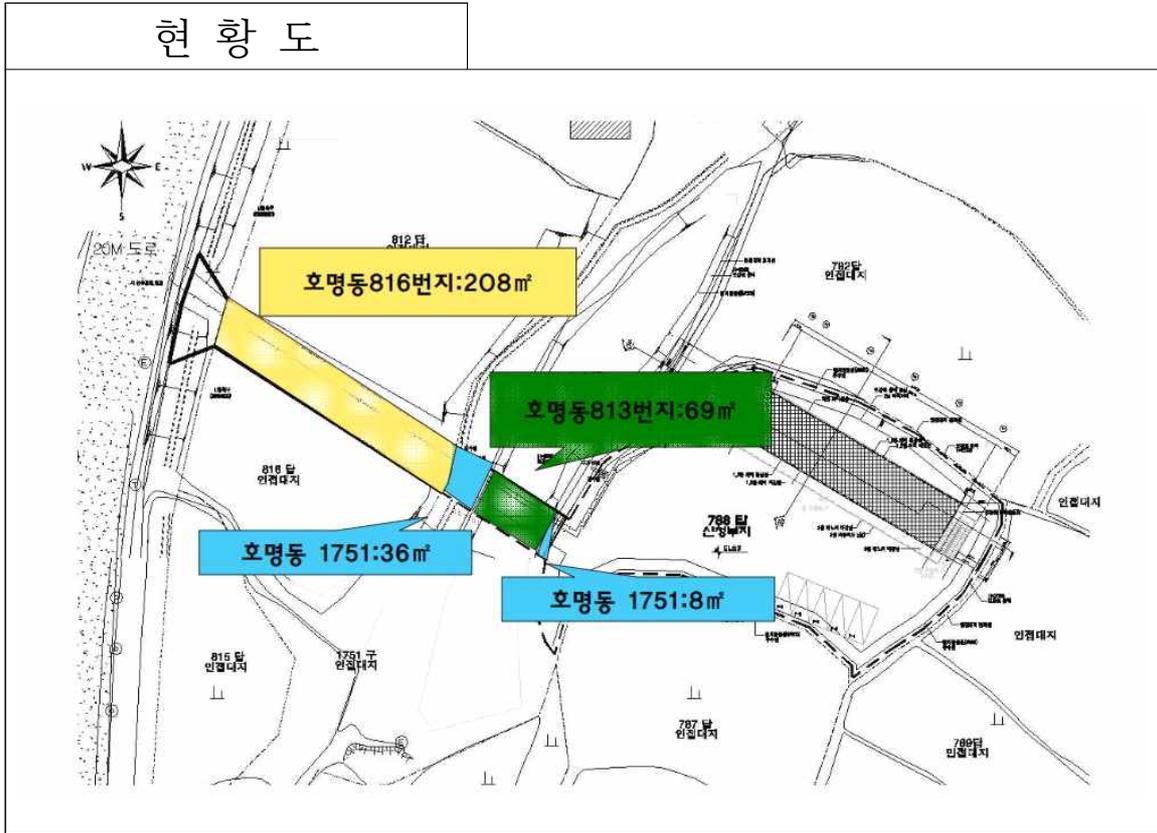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1,803	322	
변경	계			51,044	321	
당초	호명동	813	답	922	69	
		816	답	881	209	
		1751	구거	-	44	
변경	호명동	813	답	922	69	
		816	답	881	208	
		1751	구거	49,241	44	

※ 당초 도로 지정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2-1901호(2022.7.1.)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2023. 9. 6.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8.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020-18번지 지선 공유수면	돌산읍 모장마을 해상 부잔교 설치공사	454.7	15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3. 9. 8. ~ 2023. 9. 26.(19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9. 8. ~ 2023. 9. 26.(19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출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chlsmile1004@korea.kr)
- 담당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채린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여수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운영지침 고시」(안) 제정 행정예고

「여수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운영지침 고시」(안)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등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7일

여수시장

1. 제정이유(취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에 따라 공동주택 등 다중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체크리스트’를 제출토록 하는 등 관련 기준 이행 여부를 환기시켜 우리 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안) 주요내용

- 1) 안 제1조(목적) : 범죄예방 건축기준 운영지침 고시 목적을 정함
- 2) 안 제3조(적용범위) : 여수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중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공동주택,

다중생활시설 등)

- 3) 안 제4조(범죄예방 건축기준 체크리스트 제출)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서식(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
나. 공고기간 : 2023. 9. 7. ~ 2023. 9. 26.(20일간)
다. 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 여수시 홈페이지(공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허가과, ☎
659-4102)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제출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기간 : 2023. 9. 7. ~ 2023. 9. 26.(20일간)
라. 보내실 곳 및 연락처
- 우 편 : (우59675)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허가과(학동)
 - 팩 스 : 061-659-5836
 - 전자우편 : akxlfek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행정예고(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여수시 허가과(전화
061-659-4102, 팩스 061-659-5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범죄예방 건축기준 운영지침 고시(안)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범죄예방 건축기준 운영지침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란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여수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하며,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범죄예방 건축기준 체크리스트 제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농가DB구축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

2023년도 하반기 농가정보시스템 DB구축을 위한 현지실태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여 수 시 장

1 공고 및 원서접수

- 가. 공고기간 : 2023. 9. 8.(금) ~ 9. 15.(금) (8일간)
- 나. 접수기간 : 2023. 9. 13.(수) ~ 9. 15.(금) 18:00까지(근무시간 내)
- 다. 접 수 처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주동1길 32, 주삼동)
-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가능[전자접수 52jjang52@korea.kr-접수 후 유선알림필]
※ 단, 2023. 9. 15.(금) 18:00이내 도착분에 한함

2 채용 및 근무조건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농업정책과	현지실태 조사업무	4명	2023. 10. 4. ~ 2023. 12. 31. (약 3개월) (09:00 ~ 18:00 / 1일 8시간, 월~금)

보수	기타
76,960원/ 1일 및 그 밖의 법정수당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름

3

직무기술

<p>주요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별 경영현황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별, 시기별 주요작물 재배현황 조사 - 농작물 출하처 및 소득현황 조사 - 친환경농산물 납품 현황 및 의향 조사 						
<p>필요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시민지향마인드 ○ (직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확인을 위해 지리 이해도가 높은 자 - 농가 DB 구축 위한 업무의 이해 						
<p>필요 지식 (개인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 관련 지식 ○ 친절한 시민응대 						
<p>응시 자격요건</p>	<p>관련분야 : 농가정보시스템관리 및 실태조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자격</td> <td>○ (공통자격)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접수일 까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td> </tr> <tr> <td>경력</td> <td>○ 해당없음</td> </tr> <tr> <td>학위</td> <td>○ 해당없음</td> </tr> </table>	자격	○ (공통자격)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접수일 까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자격	○ (공통자격)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접수일 까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p>우대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관련 업무경력 3개월 이상(5점) ○ 운전면허증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보통 이상 (10점), 2종보통 (8점) 						
<p>가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4 채용분야 가산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서류, 면접 각각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과 우대요건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서류, 면접 각각 적용)	
분야별 우대요건	직무기술서에 따름	
장애인	평가항목별 10% (서류전형 적용)	

5 응시제한

가.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회피하여 공정한 채용시험을 방해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 응시제한을 받은 자(해당 응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응시 제한)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및 평가표에 따른 서면심사. 단, 응시인원이 채용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소수점은 올리며 전부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① 자기소개서					
점수	2점	4점	6점	8점	10점
내용	4개 평가 지표 중 어떤 것도 잘 드러나지 않음	4개 평가 지표 중 1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중 2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중 3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모두 명확히 드러남
② 직무수행 계획서					
점수	0점		5점		10점
내용	2개 평가 지표 중 어떤 것도 잘 드러나지 않음		2개 평가 지표 중 1개가 명확히 드러남		2개 평가 지표 모두 명확히 드러남

○ 서류심사 : 2023. 9. 18.(월) 예정, 홈페이지공고 및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23. 9. 20.(수) 예정 * 일정 변동 시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라. 면접시험 평정표

평가항목(5개항목)	점수	비고
계	50점	
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 면접시험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면접 심사기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다. 최종합격자 : 2023. 9. 22.(금)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기준으로 생년월일 및 현재 주소가 나오게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마. 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확인서 1부

(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관계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 또는 회피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바. 자격증명서 각 1부(원본 제시,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사.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닐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스스로 기재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 선발을 위해 여주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채용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해당 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주시 비정규직 채용 응시에 제한됩니다.
- 라.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되 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명서류는 공고일 전 기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된 날의 14일 이후부터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농업정책과 농정팀(☎ 061-659-440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채용분야	현지실태조사	접수번호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지원직무		
현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가점항목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해당자만 체크)			
2. 교육사항(1)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교육 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사항(2) *지원자격 요건상 학위 취득이 필수적인 경우 작성				
전공분야	학위 취득일	학위 종류		
3. 자격사항 *직무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입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력사항 *직무관련 경력사항만 기입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역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 원 자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응시원서 등 제반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뒷면>

1.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2.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3. '제반서류'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 ① 응시원서 : 접수번호를 제외하고 인적사항은 필수로 기재하되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며 응시자 이름과 (인) 부분에 서명하여 제출
- ② 이력서 : 인적사항 및 해당사항 전부 입력
- ③ 자기소개서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④ 직무수행계획서(해당분야)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⑤ 경험 및 경력기술서(해당분야)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동의 체크 및 본인 서명
- ⑦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 : 친인척 기준을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입

【 붙임서류 】

1.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생년월일 및 현주소만 나온 자료)
 2. 경력증명서 각 1부(경력보유자, 경력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제시, 자격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 붙임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이 력 서

(1쪽)

<필수>			
성 명	(한글)		
주 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취 득 일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기타실적, 능력 등)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등록번호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 여부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여부는 해당항목에 '○' 로 표시 후 증빙자료 첨부

【붙임 3】

자기소개서

(2쪽)

○ 각 항목에 대하여 600자 이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칸을 별도로 눌러 활용가능>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본 항목에 따라 기술하고
지원동기, 성격 및 가치관, 업무의 전문성, 앞으로의 다짐 등 자신의 생각
등이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작성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학교명, 출신지, 예전 직장, 부모직업
등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거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갑작스럽게 발생한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활용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3쪽)

3. 과거 업무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이견이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업무에 대해 가장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계획서

(4쪽)

○ 주요내용1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담당예정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업무 추진전략(계획)의 충실성과 적실성을 평가하므로 내실 있게 작성 바랍니다.>

(유의사항) 작성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내용부실, 응시분야와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활용 가능

1. 응시분야 직무수행 추진계획

2. 응시분야 직무수행 추진전략

경험 및 경력기술서

(4쪽)

○ 작성요령

- 이력서에 기재한 직무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음

1) 소속 조직 /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

2) 주요 활동 내용 및 성과(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을 나누어 작성 기재)

3) 활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행동

4) 본인의 성과(업무 추진)으로 인해 조직에 기여한 내용 및 기여 정도

5) 지원분야 업무 수행 시, 본인의 강점과 기여할 수 있는 측면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여수시
이용 목적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공직자 이해관계 확인 포함)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2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 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

2023. . .

성 명

(서 명)

여수시장(읍면동장) 귀하

【붙임 7】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관계 확인서

○ 성 명 :

○ 응시번호 :

○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현황

* 배우자, 본인의 4촌 이내 친족,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별첨 참조)

연번	친인척 성명	친인척 직급(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1			
2			
3			
해당 없음			

상기 본인은 공정한 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시청 내 친인척현황 조사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으며 해당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수시 비정규직 채용에 응시가 제한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하며 서약합니다.

2023. . .

작성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7-1】

작성 대상 친족 기준

구분		0촌	1촌	2촌	3촌	4촌
본인	친가	부부	○ 부모 ○ 자녀	○ 조부모 ○ 형제 및 그 배우자	○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 형제의 자녀(조카)	○ 백부, 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 외조부모	○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배우자	친가		○ 부모	○ 조부모 ○ 형제 및 그 배우자	○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 형제의 자녀(조카)	○ 백부, 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 외조부모	○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우리 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바지선 잔해로 인하여 미관 저해, 해양오염 발생, 보행·운전자 불편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3년 9월 25일(월)**까지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1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3. 9. 11. ~ 2023. 9. 25.(14일간)
2.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제원 : 바지선 잔해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폐자재 및 그 밖의 물건)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 공유수면관리팀(☎061-659-3971)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여수시 공고 제 2023-2588호			
무 단 방 치 물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594-9 (여수해양경찰서 돌산파출소 앞)		
물 건 제 원	바지선 잔해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3-4호
제거 예정일자	2023년 9월 25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위치도		현장사진	
<p>위 방치물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미관 저해,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u>2023년 9월 25일(월)까지</u>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3년 9월 11일</p> <p style="text-align: right;">여 수 시 장</p> <p style="text-align: right;">(담당자 : 해양정책과 061-659-3971)</p>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우리 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바지선으로 인하여 미관 저해, 해양오염 발생, 보행·운전자 불편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3년 9월 25일(월)**까지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1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3. 9. 11. ~ 2023. 9. 25.(14일간)
2.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제원 : 바지선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폐자재 및 그 밖의 물건)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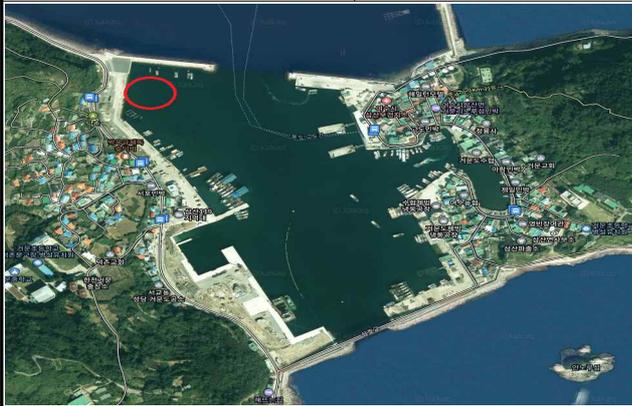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 공유수면관리팀(☎061-659-3971)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여수시 공고 제 2023-2590호

무 단 방 치 물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삼산면 거문항 내 (덕촌 마을 앞 해상)		
물 건 제 원	바지선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3-5호
제거 예정일자	2023년 9월 25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위치도



현장사진

위 방치물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미관 저해,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3년 9월 25일(월)까지**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1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해양정책과 061-659-3971)

공 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8.

여 수 시 장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1. 공고기간 : 2023. 9. 8. ~ 9. 22.(15일간)
2.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내역
 - 심 의 일 : 2023. 9. 6.(수)
 - 심의안건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번호	제 2023-2호
기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기탁금액	금19,931,000원(금일천구백구십삼만일천원) - 조형물 1점
기탁목적	바다 정화활동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 인식과 동참
사용용도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이용객 휴식공간 및 포토존으로 활용
주관부서	해양정책과
심의결과	원안가결

- 심의내역 : 1건
- 회의록 : “붙임” 참조

3. 문의사항 : 여수시 징수과 (☎061-659-3580)

회 의 록

1. 위원회명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
2. 개최일시	2023. 9. 6.(수)
3. 개최장소	서면심의
4. 참석인원	위원장 여수시장 정기명 등 9명
5. 심의안건	(제2023-2호)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 금19,931,000원(금일천구백구십삼만일천원) - 조형물1점
6. 주요내용	○ 심의일자 : 2023. 9. 6.(수)[서면심의] ○ 주요심의내용 -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기탁의 자발성 여부 및 다양한 시각을 통한 기탁배경 - 기탁금품의 행정목적 기여정도 및 사회적 물의 야기성
7. 심의결과	○ 원안가결(접수결정) - 전체위원 10명 중 - 출석위원(10명) 전원 접수 승인

전문건설업(신규)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주식회사베스코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60-2
3. 법인 등록번호 : 206211-00*****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철강구조물공사업	여수-23-차-07	철강구조물공사	2023.9.8.

2023년 9월 8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탁금지법 시행령」(23. 8. 30. 시행) 개정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스포츠·영화 관람권 등 상품권 추가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상품권 포함) 가액 범위를 상향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상품권 포함)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 설날·추석 기간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 ※ 설날·추석 기간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나. 선물의 허용 범위에 스포츠·영화·공연 관람권 등 상품권 추가

○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에 한해 허용

※ 상품권: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 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제외

3. 입법 예고기간 : 2023. 9. 8. ~ 9. 28.(20일간)

4. 「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감사담당관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감사담당관
- E-Mail : jsuk8318@korea.kr
- 전 화 : 061-659-3069
- F A X : 061-659-580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여수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여수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여수시[이하 “시(市)”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시(市)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신청 중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차. 그 밖에 시(市)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였거나 요구할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 공무원(이하

“하급자”라 한다)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가상화폐”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시(市)에 파견된 공무원, 시(市)에 소속된 공중보건 의사, 공중방역수 의사,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하급자

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 공무원(이하 “상급자”라 한다)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한 경우 부당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대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 불이행
2.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대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당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하급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부당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2022. 11. 17.>

제6조 <삭제2022. 11. 17.>

제7조 <삭제2022. 11. 17.>

제8조 <삭제2022. 11. 17.>

제9조 <삭제2022. 11. 17.>

제10조 <삭제2022. 11. 17.>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7조(알선·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이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알선·청탁을 한 사람에게 그것이 알선·청탁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거절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동일한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의 내용이 알선·청탁에 해당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알선·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알선·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장 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해야 한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4. 사무분장의 변경
5. 전보

⑤ 시장은 알선·청탁을 한 공무원과 알선·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변경
2. 관광·위락단지, 산업단지 또는 주택단지의 조성
3.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4. 유통단지, 종합시장 등 대규모 상업시설의 설치
5. 신도시 건설
6.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7. 민간자본 유치
8. 도로·철도·공항·항만시설 건설
9. 각종 기금운영 및 시(市) 금고의 선정·관리
10.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도 담당했던 직무의 정보가 대외에 공표(사업계획 고시 또는 언론보도 등)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무 관련 가상화폐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가상화폐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가상화폐에 관한 정책 또는 자치법규의 입안·집행 등에 관한 정보
2.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3. 가상화폐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③ 제2항 각 호의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여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 <삭제2022. 11. 17.>

제21조(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3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1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

는 사람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대해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공무원은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도 신고해야 한다.

- ⑧ 시장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삭제 2020. 7. 10.>
-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신고해야 한다.
-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공무원이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사례금 제공자에게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초과금액”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 ⑦ 제5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초과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반환해야 할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초과금액(신고자가 초과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⑨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⑩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⑪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횡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⑫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외부강의 등의 횡수와 사례금 수수현황을 반기 별로 점검해야 한다.

제24조 <삭제2022. 11. 17.>

제25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두거나 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신분 보장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 및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여수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징계 등) ① 시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 및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보고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등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제2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다른 규칙 등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 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은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
-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폐기처분한 금품등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30조(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서면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규칙을 교육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

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2.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신청의 접수, 조사처리 및 조치
4.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1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2호의 별표1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여수시 공무원 행동강령[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2조제3항제2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도지사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1시간	40만원	40만원	40만원
	1시간 초과시	20만원	20만원	20만원
사례금 총액		60만원	60만원	60만원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함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강연·기고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강연·기고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음

마.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 위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일한 알선·청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부정청탁자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부정청탁 내 용				
근 거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일괄신고 </div> <div>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div> </div>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_____ 반환금액 : _____ 반환방법 : _____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 서식] <삭제>

■ [별지 제18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25호 서식] (신설 2019. 6. 10.)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